자료집 19-S41

제 27회 청소년정책 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3:30 ~ 16:30

장소 |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 그랜드홀(3층)

주최 | 교육부 ·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차례

제1부 유럽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좌장 : 성윤숙 센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영국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발표 **손병덕 교수**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_3

토론 **정제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_31

독일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발표 **이유미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_39

토론 **이민희 교수**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_61

제2부 북미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좌장 : 서장아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캐나다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발표 **홍경선 교수** (군산대학교 교직과) _67

토론 **김성기 교수**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_81

미국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발표 **박선영 교수**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_85

토론 **박교선 교장** (향남고등학교) _97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계획(안)
-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부 · 전라남도교육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개요

○ (목적) 해외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및 정책을 통한 국제적 정책 동향을 파악 및 다양한 해외사례 공유를 통하여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 방안 모색

○ (주최/주관) 교육부 · 전라남도교육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주제)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일시) 2019. 12. 12.(목), 13:30~16:30

○ (장소)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 그랜드홀 (3층)

○ (참석)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단,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담당교원 및 희망교원,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

❑ 주요 내용

○ (제 1부) 유럽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 (제 2부) 북미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 각 세션 주제별 토론 및 질의응답 진행

※ 세부일정은 '참고1' 참고

참고 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세부 일정

사회 : 성윤숙 센터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시간		내 용		비 고
13:00~13:30	-	등록 및 안내		
13:30~13:50	20′	인사말 및 환영사		인사말 : 송병국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환영사 : 원용연 과장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제 1부 유럽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좌장 : 성윤숙 센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13:50~14:50	30′	영국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13:50~14:10	발표 : 손병덕 교수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10~14:20	토론 : 정제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30′	독일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14:20~14:40	발표 : 이유미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14:40~14:50	토론 : 이민희 교수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14:50~15:00	10′	휴 식		
		제 2부 북미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좌장 : 서정아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00~16:00	30′	캐나다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15:00~15:20	발표 : 홍경선 교수 (군산대학교 교직과)
			15:20~15:30	토론 : 김성기 교수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30′	미국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15:30~15:50	발표 : 박선영 교수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5:50~16:00	토론 : 박교선 교장 (향남고등학교)
16:00~16:20	2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20~16:30	10′	정리 및 폐회		

※ 발표 20분 토론 10분으로 진행됨

※ 상기 세부일정은 당일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표

영국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손 병 덕 교수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및 예방 프로그램

2019년 12월

총신대학교 교수 손병덕

1. 영국의 학교폭력 실태.

1) 영국의 학교폭력(bullying) 정의.

-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모두가 합의, 공유하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영국 정부(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음

"다른 사람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히고자 의도된 반복적 행동으로, 때로 인종이나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에 관한 특정 집단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신체적 폭행, 놀림과 괴롭힘, 위협, 인신공격, 휴대폰이나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 등을 모두 포함함"

"Bullying is usually defined as behaviour that is repeated, intended to hurt someone either physically or emotionally and often aimed at certain groups, for example because of race, religion, gender or sexual orientation. It takes many forms and can include physical assault, teasing, making threats, name calling and cyberbullying – bullying via mobile phone or online (for example email, social networks and instant messenger)."

- 영국 공공 부문 정보 웹사이트(www.gov.uk)

1. 영국의 학교폭력 실태.
1) 영국의 학교폭력(bullying) 정의.

-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150여개 민간 단체들의 연합인 'Anti-Bullying Alliance'는 다음과 같이 정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어떤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이 가하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를 모두 포함함"

"ABA defines bullying as the repetitive, intentional hurting of one person or group by another person or group, where the relationship involves an imbalance of power. It can happen face to face or online."

- Anti-Bullying Alliance 웹사이트(www.anti-bullyingalliance.org.uk)

1. 영국의 학교폭력 실태.
2)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LSYPE) 2 조사 결과.

-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 2(LSYPE 2, 잉글랜드 청소년 종단연구 2) 3차년도(2015) 자료 분석 결과 응답 청소년(만 15-16세 11학년 재학생 10,010명)의 30.2%가 지난 1년 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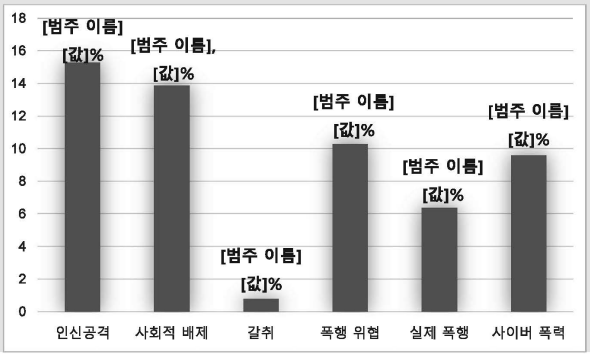

LSYPE
영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잉글랜드 청소년 종단 연구로 LSYPE 1은 2004-2010년 동안 진행, LSYPE 2는 2013-2019년 동안 진행 중. LSYPE 2의 경우, 2013년 당시 9학년(만 13-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 구축

1. 영국의 학교폭력 실태.

2)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LSYPE) 2 조사 결과.

- **동일한 1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LSYPE 1(잉글랜드 청소년 종단 연구 1) 2006년 자료와 비교한 결과**
  학교폭력 경험 소폭 상승 / 신체적 폭행과 위협, 갈취는 감소 / 인신공격과 사회적 배제 증가 / 새로 사이버 폭력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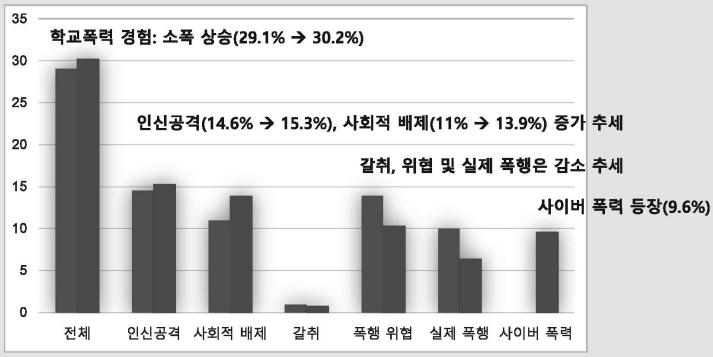

1. 영국의 학교폭력 실태.

3)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CSEW) 조사 결과.

-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CSEW, 잉글랜드웨일즈 범죄실태조사) 2014-2018년 자료 분석 결과**
  응답 청소년(10-15세) 6명 중 1명(17%)이 지난 1년 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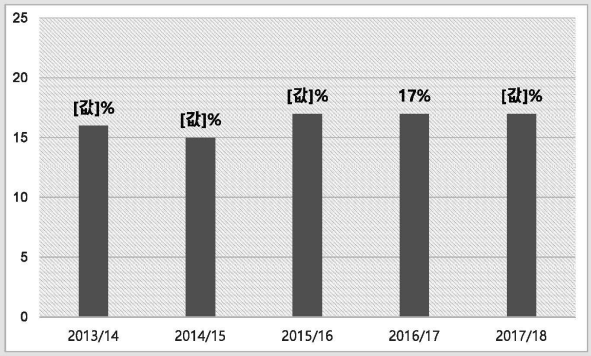

CSEW
영국 통계청에서 매년 3만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관련 설문조사 실시 / 2009년부터 10-15세 청소년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학교폭력 관련 설문을 추가 실시 중임

1. 영국의 학교폭력 실태.

3)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CSEW) 조사 결과.

- **학교폭력의 주된 유형은 언어 폭력 및 무시(89%)이며, 빈도는 주 1회 이상 경험하는 경우(32%)가 가장 많았음**
- **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저연령,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학교부적응(무단결석, 정학 등)의 경우 폭력 피해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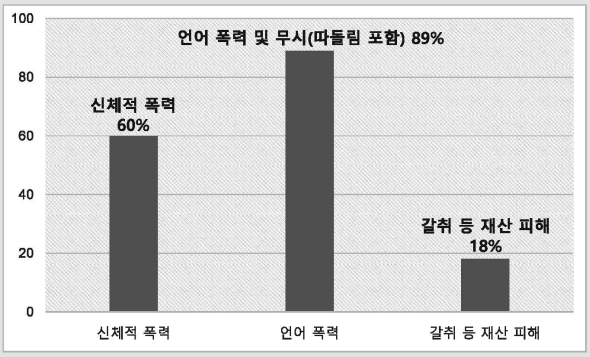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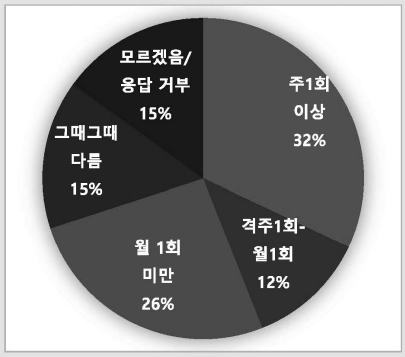

1. 영국의 학교폭력 실태.

3)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CSEW) 조사 결과.

- **지난 1년간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응답 청소년의 7%로 지난 5년간 큰 변화는 없음**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여학생의 경우 사이버 폭력 경험 비율이 남학생의 약 1.8배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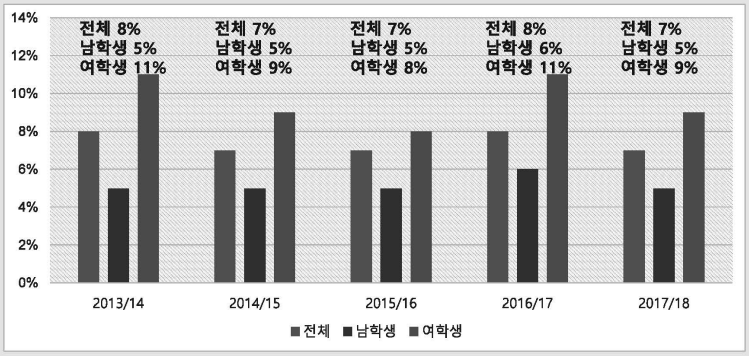

1. 영국의 학교폭력 실태.

3)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CSEW) 조사 결과.

-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매우 잘 함 30%, 대체로 잘 함 41%)**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을 나누어 분석해 보면, 피해 학생은 61%만 긍정적 평가, 35%는 부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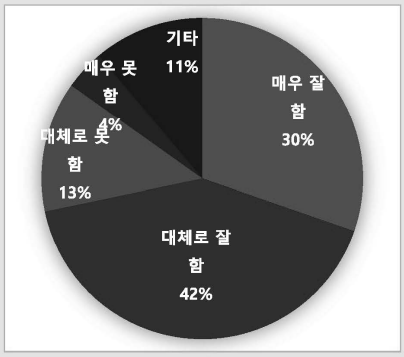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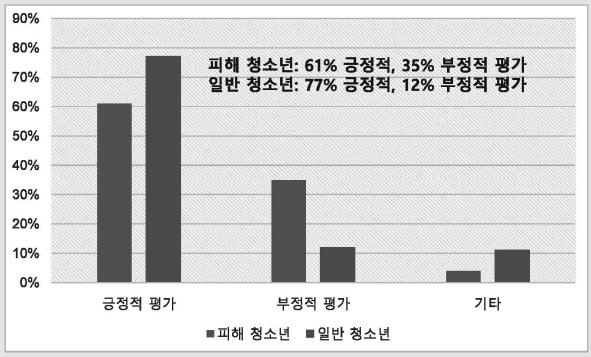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1)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

2006년 교육감사법 제89조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Section 89**	(1)(b)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행동(good behavior)을 장려하고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preventing all forms of bullying among pupils) 시책을 마련해야 함 (6) 이러한 시책은 서면으로 작성하여(in the form of a written document) 모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공표 되어야 함(generally known within the school and to parents)
2012년 개정 교육 규정 (사립학교기준) 3부 **Education(Independent School Standards) (Amendment) Regulations 2012 Schedule 1 Part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전략 의무가 사립학교로 확대 적용 (an effective anti-bullying strategy is drawn up and implemented)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1)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

2010년 평등법(차별금지법) The Equality Act 2010	공공부문 내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별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목적의 법 그 결과 공공기관은 불법적 차별과 혐오, 폭력 등을 모두 제거할 의무를 갖게 되었음 Part 6 (Education) 제1장은 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모든 차별과 혐오, 괴롭힘, 폭력 등을 예방할 책임이 학교에 있음을 밝히고 있음
2002년 교육법 제175조 The Education Act 2002 Section 175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함(safeguarding and promoting the welfare of children)
1989년 아동법 제47조 The Children Act 1989 Section 47	(1)(b) 아동이 고통받고 있거나 또는 고통받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reasonable cause to suspect that a child who lives, or is found, in their area is suffering, or is likely to suffer, significant harm),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조사 및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1)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

그 외 형법 Criminal Laws	학교폭력이 위협, 괴롭힘 또는 그 외 범죄 등을 수반하는 경우, 형법의 적용 가능 • The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괴롭힘방지법) • The Malicious Communications act 1988 (악성 커뮤니케이션법) • The Communications Act 2003 (커뮤니케이션법) • The Public Order Act 1986 (공공질서법)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1)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2006년 교육감사법(The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제89조

(1) 학교장은 다음을 위한 시책을 반드시(must) 수립하여야 함

(a) 학생들의 자기조절 및 권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증진하고
(b) 학생들 간에 바람직한 행동 및 상호 존중을 장려하고, ***특히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in particular, ***preventing all forms of bullying among pupils***)

(c) 수용 가능한 행동의 기준을 세우고
(d)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주어지는 과업을 완수하게끔 하는 한편
(e) 학생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 일체를 말함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1)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2006년 교육감사법(The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제89조

(6) 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수립하는 시책은 반드시(must) 서면 형태로 작성되어 다음과 같이 공표되어야 한다.

(a) 학교장은 수립한 시책을 ***학교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널리 공표하여야*** 한다.
(must ***make the measures generally known*** within the school and to parents of registered pupils at the school)

(b)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수립한 시책을 모든 학생과 부모, 모든 교직원과 종사자(외부 강사, 봉사자 등 소속과 급여 여부 상관없음) 등이 관심을 갖고 인식, 숙지할 수 있게끔*** 필요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must in particular, ***at least once in every school year, take steps to bring them to the attention*** of all such pupils and parents and all persons who work at the school (whether or not for payment))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2)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정책

영국 정부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 공표하도록 의무화(법적 의무)

법적 근거	교육부	교육표준청
2006년 교육감사법 제89조 2012년 개정 교육규정(사립학교기준)	학교의 시책 수립, 운영을 위한 지침 제시 (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학교 평가와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학교폭력 관련 시책과 프로그램)
	•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 • 피해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침 • 가해 청소년 징계에 관한 지침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부 지침

1. **학교 내 바람직한 행동(good behaviour)을 장려하는 문화 확립**
2. **학부모에게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및 학부모 참여를 장려**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개입 절차와 내용 등의 공유를 통해,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
   -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모든 학생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게끔 함**
4.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에 관한 학교 정책과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도모함**
5.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와 규율 방침을 확립하고 실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부 지침

6. **다양성 존중에 관한 교육과 토론을 활성화**
   - 교육과 열린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성과 다름의 존중과 수용을 가르침(종교, 민족, 인종, 성별, 장애, 외모, 가구 특성)
7. **전문적인 기관(단체) 및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
   - 학교폭력 관련 전문적인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 효과를 극대화함(전문가 강연, 상담, 전문자료 등)
8. **교직원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학교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학교폭력 대응과 예방 역량 강화**
9. **경찰, 아동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10. **보다 안전하고 통합적인 환경으로의 개선을 통해 신고 접근성 개선 및 신고와 보호에 대한 신뢰 제고**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부 지침

1.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각각의 상황과 문제,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 한 지원을 성실하게 제공해야 함**
2. **학교폭력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대한 지침**
   - 특히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 문제와 같이 학교폭력의 영향이 심각한 경우, SEND(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장애 및 특수교육 욕구)를 지닌 청소년에 해당하는 지원 연계(우울 등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제공)
3.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 등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등교 중단/거부는 학업 중단 내지 학업 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게다가 피해 청소년이 학교에서 환영 받지 못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4. **학교폭력의 영향이 매우 심각하여 피해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가기 어려울 경우, 대안적 기회를 지원해야 함**
   - 다른 학교로의 전학, 만약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제도권 교육으로의 재편입이 어려울 경우 대안교육 기회로 연결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 오히려 교육과 학업의 기회로부터 소외,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가해 청소년 징계를 위한 교육부 지침

1 공정하고 일관된 징계 조치를 적용하되, 학교폭력의 동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학교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징계조치를 내려야 함
- 징계조치를 적용할 때는 공정성과 일관성, 가해 청소년의 장애 및 특수교육 욕구(SEND) 여부, 피해 청소년의 욕구 등을 고려
- 학교폭력 행동 아래에 깔려 있는 동기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가해 청소년 역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일 수 있으므로, 동기와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중요함)

2 전문적인 기관(단체) 및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

- 학교폭력 관련 전문적인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둘러싼 동기와 갈등, 위기 등을 파악
- 이를 통해 전문적, 맞춤형 개입과 지원 가능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2)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3)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대책

교육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른 각 학교 단위의 시책은 크게 3가지 전략(예방적 전략, 또래 지원 전략, 반응적 전략)으로 구분됨
예방적 전략은 다시 전체 학교적 접근, 교실 전략, 운동장 전략으로 구성됨

예방적 전략 Proactive Strategies	전체 학교적 접근 Whole-School Approaches	PSHEE(인성, 사회성 및 건강 교육), 조회, 학교 위원회, National Healthy School Programme(건강한 학교 프로그램), 회복적 문화, 부모 참여 지원 체계 등
	교실 전략 Classroom Strategies	커리큘럼 내 접근, 협력적 집단 활동, 서클 타임(circle time) 등
	운동장 전략 Playground Strategies	운동장 개선, 운동장 정책, 점심시간 감독관 역량 강화 등
또래 지원 전략 Peer Support Strategies		또래 집단 구성, 또래 멘토링, 또래 경청, 또래 중재, Buddy 제도, Bystander Defender Training (방관자에서 방어자로의 교육) 등
반응적 전략 Reactive Strategies		직접적 처벌, 학교 재판소, 회복적 접근, 지지 그룹, Pikas의 의사소통 전략, 그 외 반응적 전략 등

(각 전략의 세부 내용은 이후 프로그램 부분에서 기술)

3.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1)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와 교육표준청(Ofsted).

- **교육부: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추진 주체**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시책 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 / 이를 위해 각종 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발, 지원)
- **교육표준청(Ofsted): 감사를 통해 각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정책의 추진 실태와 성과 등을 점검, 평가**

교육표준청 학교 감사 프레임워크 Education Inspection Framework	전반적 효과성 Overall effectiveness	전반적 교육의 질과 성과, 학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학생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평가
	교육의 질 The Quality of education	학교의 교육과정이 각 단계에서 학생들이 습득하길 기대하는 지식과 기술, 곧 교육 목표와 의도, 실제 교육과정의 실행과 영향 등
	행동과 태도 Behaviour and attitudes	안전하고 통합적인 학교 환경,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학교폭력이나 차별, 혐오 등이 허용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 등
	개인 발달 Personal development	전인적 발달(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관계와 성교육 등
	리더십과 관리 Leadership and management	학교장 등의 리더십과 관리 역량, 거버넌스, 학생 보호, 학생 통합 등

* Ofsted (2005). School Inspection Handbook.

3.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2) Anti-Bullying Alliance(ABA).

- **학교폭력에 반대하는 민간 단체(기관) 및 개인의 연합체(현재 150개 이상의 회원 단체 참여)**
- 비전: 학교폭력을 막고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하고 성장하고 놀고 학습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듦

- 주요 활동
  -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단체(기관)들의 연대 구축 및 협력 증진 도모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교직원 교육과 연수 제공, 학교폭력 반대 주간 등의 캠페인 실행

3.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2) Anti-Bullying Alliance(ABA).

- **All Together: ABA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전체 학교차원에서(whole-school)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현재 1,340개교 참여 중)**

  -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학교들이 직접 자체평가 실시 및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 각 학교들에서 수립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온라인 교사연수 제공(15,000명 수료)
  - 참여 학교의 79%가 프로그램 참여 후 학교폭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3.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3) 그 외 수많은 민간 기관.

- **그 외 수많은 민간 기관들에서 교육과 연수, 캠페인, 전문적 개입(상담, 치유 등) 참여**

- **대표적 전문기관**
  - **The Diana Award**: 학교폭력 반대 홍보대사 / 청소년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장려
  - **Kidscape**: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함 / 학교폭력 관련 정보 제공 및 청소년과 교직원 등을 위한 교육
  - **The BIG(Bullying Intervention Group) Award**: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해결 및 예방한 학교에 대하여 시상
  - **ChildNet International**: 청소년의 온라인상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전문 자료 제공
  - **The 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 (UKCCIS)**: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사, 학교용 자료 및 조언 제공

THE DIANA AWARD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은 크게 예방적 전략, 또래 지원 전략, 반응적 전략으로 구성됨

예방 전략(Proactive Strategies)

1 전체 학교차원 접근(Whole-School Approaches): 학생과 부모, 교직원 등 학교 모든 구성원이 참여

건강한 학교 프로그램 (National Healthy School Programme)	• 보건 교육, 건강한 식습관, 신체활동, 정서적 건강과 행복(학교폭력 주제 포함) 등을 다룸
PSHE 교육 (Personal, Social, Health & Economic Education)	• 인성, 사회성, 건강 및 경제에 관한 교육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룸 • 다양한 괴롭힘과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및 도움을 청하기, 학교폭력이 미치는 영향, 지지를 주고 받기 등이 포함되어 있음
SEAL	• 교육과정 기반 전략으로 사회정서 발달, 자기인식, 감정 관리, 사회 기술, 공감과 동기의 5개 영역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및 교육과정 내 제시

* Thompson, F. & Smith, P. K. (2010).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Anti-Bullying Strategies in Schools.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전체 학교차원 접근(Whole-School Approaches): 학생과 부모, 교직원 등 학교 모든 구성원이 참여

학교 (물리적) 환경 개선	• 학교 건물과 공간이 아동, 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보다 즐거운 공간이 될 때, 학교폭력의 가능성도 낮아짐) • 학교폭력 위험 공간, 사각지대 규정 및 CCTV 설치 등
조회 등 전체 집회	•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들에 관하여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정책 발표, 기풍과 문화 시작을 위한 기회) • 학교폭력 예방 주간 캠페인과 결합하여 특별 집회를 열기도 함
학교 위원회	• 학생 대표가 모두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정책 개발과 논의의 장,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체계, 또래 지원의 방편이 됨 • 세부 영역별 위원회, 워킹그룹 등 운영 / 또래 지원 전략과 연계, 활용
부모/보호자 참여 지원 체계	• 정기적인 뉴스레터, 학부모 워킹그룹 운영, 위기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방과 후 모임 등 다양한 형태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전체 학교차원 접근(Whole-School Approaches): 학생과 부모, 교직원 등 학교 모든 구성원이 참여

긍정적 관계와 소통에 관한 롤모델	• 학교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관계와 소통의 좋은 롤모델이 됨 • 이를 위한 교직원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교직원 스스로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관심 제고, 행동과 실천 촉구의 의의도 있음
사회정서 기술 발달을 지원하는 회복적 교풍과 문화	• 회복적 교풍과 문화 형성, 확산을 위한 팀 구성 및 운영 • 모든 구성원의 참여(회의, 교실 별 컨퍼런스, 설문조사 등)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 교실차원 전략(Classroom Strategies):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알리고 대응 및 예방 방안 모색

교육과정(커리큘럼) 연계	• 교과목 수업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진행(관련 문헌, 시청각 자료 등 활용, 역할극 또는 인형극, 토론, 워크숍, 집단 활동 등 다양한 교육방법) • 드라마 수업이나 PSHE 과목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 창의적 연계 가능
협력적 집단 활동	• 교과목 수업 등 일반 교육과정 운영 내 협력적 집단 활동 활성화를 통해 팀 워크 정신, 협동심과 협업력 등을 훈련, 개발 • 이를 통해 학생들 간 관계 개선, 협력적 문화 제고
서클 타임 (Circle Time)	• 매주 정기적으로 서클 시간(circle time)을 운영 – 교실에서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한 번에 한 명씩 이야기하는 오픈 포럼(주 1회, 30분)
소그룹 활동 (Quality Circles)	• 수업 중 소그룹 활동을 통해 특정 이슈(ex.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해결 시도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 운동장 차원 전략(Playground Strategies): 교실 밖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예방 전략

학교 운동장 개선	•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보다 창의적 기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재구조화하고 디자인하는 개선 노력 • 운동장 디자인 및 혁신, 다양한 공간 구성(quiet area 등)
운동장 정책	•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 점심시간 등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정책 • 친사회적 놀이와 활동, 게임 등의 활성화를 통해 관계 역량 증진에 기여
점심시간 감독관 역량 강화	• 놀이와 활동 기획 및 운영, 학교폭력 행동의 발견과 대처, 갈등 상황 해결 등에 대한 점심시간 감독관의 역량 강화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또래 지원 전략(Peer Support Strategies)

버디 제도 (Buddy Schemes)	• 취약한 학생(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 전학생과 신입생 등)에 대하여 선배 또는 또래가 버디(buddy)가 되어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 • 버디 모집 및 교육과 훈련(경청, 중재 기술 등), 슈퍼비전 등
또래 중재	• 중재 역할을 맡은 선배 또는 또래 중재자는 가해 및 피해 학생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시도(문제를 정의하고 핵심 이슈를 파악, 가능한 해결방안을 토론, 행동계획을 협상 및 합의하여 실행, 평가) • 또래 중재자의 모집과 훈련(경청 기술, 문제해결 기술 등), 슈퍼비전
또래 멘토링	• 또래 멘토 모집과 선발, 훈련(경청 기술, 공감 역량, 비밀 보장 및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알려야 할 때 등) 및 슈퍼비전 • 특정 멘티와 짝을 이루어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멘토링, 또는 상담실과 같은 특정 공간을 운영하여 점심시간 등의 때에 방문하는 학생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또래 지원 전략(Peer Support Strategies)

또래 경청	• 청소년의 경우 교사보다 또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기 쉬움에 착안 • 또래 경청자로 선발, 훈련된 학생들은 뱃지나 리본을 착용하여 다른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 학교와 운동장,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래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 및 개입 진행을 도움
친구 형성 **(Circle of Friends)**	•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친구가 되어주는 활동 • 교실 또는 집단 단위 학생들이 전문가와 만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위한 도움 방안을 논의, 모색하여 실제로 그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친구가 되어 주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친구를 보호하는 활동
방관자에서 방어자로의 교육 **(Bystander Defender Training)**	• 학교폭력의 역동 가운데 수동적 방관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방어자가 되게끔 교육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적,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신청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교육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또래 지원 전략(Peer Support Strategies)

학교폭력 방지 위원회	• 학생 대표를 선출하여 학교폭력 방지 위원회를 구성, 학교 교직원 등과의 정기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함
사이버 멘토	• 또래 멘토링 및 상담을 온라인 상에서 수행함(온라인 채팅 도구) • 따라서 쉬는 시간, 방과 후, 주말 등을 활용한 멘토링 가능 • 사이버 멘터 모집과 선발, 교육 및 전문 상담가에 의한 온라인 슈퍼비전
점심시간 클럽 **(Lunchtime Clubs)**	• 또래 멘토, 버디 등에 의해 학교폭력 취약 및 위험 청소년을 위한 모임 운영 • 점심시간을 활용한 모임 활동으로 비공식적 지지이자 상호 도움과 지지를 주고받는 자조모임적 성격을 가짐(낙인효과 상대적으로 낮음)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반응적 전략(Reactive Strategies)

직접적 처벌	• 꾸짖음부터 반성문, 사과편지, 부모 면담, 부모의 사과 편지, 근신, 지역사회 봉사, 정학, 퇴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 • 학교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가해 학생과 학교 전체에 전달
회복적 접근	• 갈등 해결 및 상처 회복에 초점을 둔 접근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비공식적 대화에서부터 공식적 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문제해결 서클, 회복적 토론, 교직원과 학생 간 회의, 회복적 계획, 미니 컨퍼런스, 교실 컨퍼런스 등) •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을 인식시키고, 자신이 야기한 문제를 바로잡고 자신이 입힌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피해 학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알리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반응적 전략(Reactive Strategies)

지지 그룹 방법	• 학교폭력에 대한 집단 차원의 대응 전략 • 7단계로 구성 ① 퍼실리테이터와 피해 학생의 개별 대화 ② 피해 학생이 추천한 학생과 가해 학생을 포함해 최대 8명으로 그룹 구성 ③ 퍼실리테이터가 그룹 안에서 피해 학생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④ 퍼실리테이터는 모든 참여자에게 피해 학생이 안전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공동 책임을 갖고 있음을 강조 ⑤ 각 그룹 구성원은 피해 학생을 도울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냄 ⑥ 공동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재확인하며 미팅을 마무리함 ⑦ 일주일 후, 퍼실리테이터는 각 그룹 구성원과 일대일 미팅을 가져서 각 개입과 노력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함 • 이러한 방법을 통해 피해 학생 주변에 지지 그룹을 형성하고 또래로부터의 지원과 지지가 이루어지게끔 함(가해 학생에게도 책임과 역할이 주어짐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반응적 전략(Reactive Strategies)

Pikas 방법	• 개인 및 집단 차원의 만남과 회의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 (처벌을 지양하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 • 6단계로 구성 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관련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지, 비난 또는 고발을 위함이 아님) ② 가해 학생으로 의심되는 학생과 개별적으로 만남 ③ 피해 학생과의 개별적 만남 ④ 어떠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확인(모든 관련자와의 개별 만남) ⑤ 가해 학생으로 의심되는 학생과의 집단 회의를 통해 무엇을 진전으로 바라볼 것인지 확정 ⑥ 가해 및 피해 학생과의 집단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
학교 법정 (School Tribunals)	• 학교 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학생들의 목소리의 형태로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 해결하는 방법이자 학교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음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전체 학교적 접근
■교육과정(커리큘럼) 전략
■운동장 전략
■또래 지원 전략
■반응적 전략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 PSHE 교육, 전체 집회, 학교 위원회 운영, 교육과정 연계, 건강한 학교 프로그램, 직접적 처벌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전략에 관하여 전국 규모의 학교 설문조사를 실시(1,378개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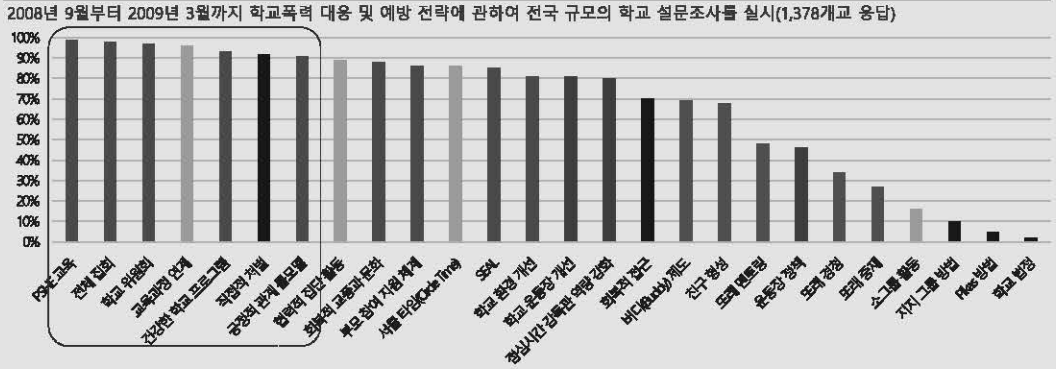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전체 학교적 접근
■교육과정(커리큘럼) 전략
■운동장 전략
■또래 지원 전략
■반응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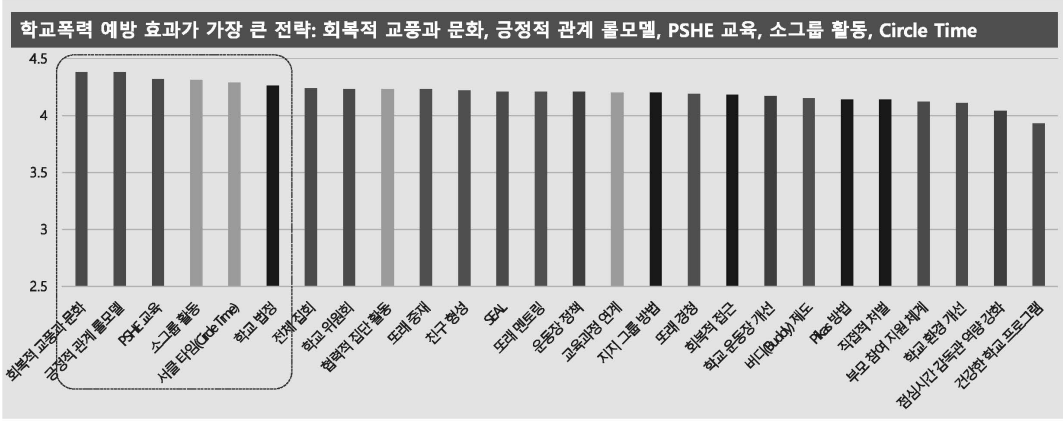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 우수사례: Warden Park Primary Academy (Sussex).

- 웨스트 서섹스(West Sussex) 주 쿡필드(Cuckfield) 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 학생 구성의 다양성이 큰 특징(전체 학생 중 장애 및 특수교육 욕구를 지닌 학생, 소수 민족 배경을 가진 학생,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교육복지 수급 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 Ofsted 학교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2015)
-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정책 학교 우수사례로 소개됨(Department for Education, 2018a)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 우수사례: Warden Park Primary Academy (Sussex).

1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보다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학교의 물리적 공간과 조직 개선

운동장 구역화(Zoning)	• 운동장을 각각의 다양한 활동 공간들로 구역화 (운동 공간, 독서 또는 보드 게임 등을 위한 조용한 공간, 일반적인 놀이 공간) • 놀이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선호 존중, 즐거운 경험 극대화 추구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 감독 강화	•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대한 가능한 많은 교직원을 배치하여 감독 강화 (교사, TA 등)
놀이 리더와 또래 멘토	• 학생들 가운데 놀이 리더와 또래 멘토를 선발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이 학생들에게 놀이 탐색 및 시도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구역별 반장(Prefects)	• 복도, 화장실, 식당, 운동장 등 다양한 공간과 구역 각각에 대한 반장을 둠 • 학생들의 학교 공동체에 대한 인식, 학생 자치 및 책임감 등 강화
상담지원 팀(Pastoral Support Unit) 강화	• 상시 근무하는 상담가 2명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참고: 부속 어린이집 유아 포함 전교생 435명 / 1-6학년 각 2개 반)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 우수사례: Warden Park Primary Academy (Sussex).

2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에 관한 학교 정책과 문화 확립

친절을 핵심 가치로 삼는 교풍	• 학교 내 모든 정책과 활동 내 '친절'을 핵심 가치이자 원칙으로 삼음 • 모든 교직원이 '친절'에 대한 롤모델의 역할을 담당
긍정적 행동과 성장 마인드에 초점	• 학생들의 긍정적 행동 및 보다 열심히 노력할 수록 보다 성공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
주의 깊은 언어 사용	• 학교폭력을 비롯한 갈등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주의 깊은 언어 사용 • 특히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규정, 낙인 찍는 표현 지양
불친절하거나 긴장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즉각적 대응	• 불친절한 행동,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교사가 즉각적으로 대응 (행동의 의미,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회복적 실천 접근에 기초한 명확한 처벌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위한 회복적 실천 접근 • 투명하고 명확한 대응
부모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업	•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모와 긴밀히 교류하고 협업, 협력함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 우수사례: Warden Park Primary Academy (Sussex).

3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교직원 교육과 훈련	• 학교폭력을 포함한 문제행동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과 이해 제고 및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롤모델로서의 교직원 역량 강화 목적 • 지역교육청 및 외부 전문기관/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훈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 교실 내 수업(PSHE 수업 등), 교실 내외의 활동, 전체 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추진 • 주제 예시: 다르다는 것의 의미, 친절행동 방법제시, 학교폭력의 개념, 간접적 학교폭력 및 방관적 태 문제 등)
부모 참여 활성화	• 매 학기 부모 상담, 교실별 부모 모임 등을 통해 소통, 부모 참여 촉진 • 부모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전달 (친절이 가장 중요함) / 가정으로 확산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 학생 행동에 관한 상세한 기록 체계 • 학생과 부모의 경험과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정기 실시 및 모니터링

4.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2) 우수사례: Warden Park Primary Academy (Sussex).

Warden Park 초등학교 – 행동 관리 및 학교폭력 예방 정책 (예시)

WARDEN PARK PRIMARY ACADEMY
Behaviour Management and Anti-Bullying Policy

This policy has regard to the DCSF guidance Safe to Learn: embedding anti-bullying work in schools (DCSF-00656-2007)

1. Aims.

Warden Park Primary Academy aims to be an exceptional learning community with high expectations of achievement, attainment and behaviour through –

- High expectations and excellence
- Ensuring that all children with a variety of needs and abilities can achieve their best
- Developing happy, successful and motivated children
- Motivating and inspiring the community to make learning irresistible, fun and life long for the children, families and staff at Warden Park Primary Academy

Children learn best when they are happy, secure and clear about what is expected of them in all aspects of life and when they are encouraged, consistently, to behave well.

At Warden Park Primary Academy we encourage and expect high standards of behaviour from and towards everyone.

We realise that the great majority of children enjoy learning, work hard and behave well. These children must be recognised and rewarded.

The challenging behaviour shown by a small number of children is often the result of poor language and communication skills, poor social skills or undeveloped emotional intelligence. These children must also be recognised and, whenever possible, rewarded. They must also be supported in order that they may develop skills which will enable them to manage and improve their behaviour. When dealing with aspects of behaviour we will separate the child from the behaviour and focus talk around the "behaviour".

Warden Park Primary Academy
Anti-Bullying Policy – Appendix 1

This policy has regard to the DCSF guidance Safe to Learn: embedding anti-bullying work in schools (DCSF-00656-2007)

1. Aims.

To promote a culture that rejects bullying and cruelty and to provide pupils with a broad and balanced curriculum which promotes children's spiritual, moral, cultural,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2. Objectives.

- Pupils will know that bullying issues are dealt with efficiently and effectively
- Staff are responsive to bullying behaviour
- No bullying will take place in the school
- Pupils will be empowered.

3. A definition of bullying.

"When someone continually behaves nastily to others."

4. Agreements.

We agree that bullying behaviour should be challenged in our school to ensure that:

- Children are safe and happy whilst they are at school
- Academic achievement is not affected

5. 시사점.

1 학교 및 학교장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의무와 책임 강화

- 영국은 모든 학교 및 학교장에 대하여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을 위한 학교 정책을 수립, 공표할 것을 법적으로 명하고, Ofsted의 학교 감사와 평가 항목 내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실제 정책 수행 여부와 효과, 학교폭력 및 학교 환경 안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있음
- 한편 영국 정부는 학교들에 대한 지침을 통해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 정책,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 학교의 대응과 개입 절차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정책 실행 과정과 성과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게끔 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강제적 의무와 책임 부여를 통해 영국 정부는 보다 능동적, 선제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학교장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5. 시사점.

2 부가적, 개별적 대응보다 총체적 대응전략

- 영국 학교들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전략은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즉 학교 건물과 인프라에서부터 학교 정책, 교풍과 문화,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전체 집회, 교실 밖 다양한 활동, 운동장 개선 전략, 교직원 교육과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음
-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한 영역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학교 건물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개선, 교직원 인식 및 예방 역량 강화, 수업 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관심과 인식 제고, 학교 내 상호 공감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립, 부모 지원과 참여 등 다양한 영역과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총체적 대응이 필수적임

5. 시사점.

3 학교폭력의 문제 자체보다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집중

- 영국의 학교폭력 정책 및 학교들의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음. 오히려 학교를 좀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며 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의 공간 개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의 다양한 놀이 공간과 활동 마련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다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음
- 한편 문화적 차원에서도 학교 내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학교의 문화이자 교풍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며 보다 긍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학교폭력' 문제 자체에 지나치게 접근할 경우 청소년들에 대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굴레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문제에 대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둘 뿐 사전예방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 수동적이게 됨. 반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의 지향점에 초점을 두면, 보다 적극적, 능동적, 포괄적으로 정책과 실천을 시도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도 보다 긍정적 관점과 참여적 태도를 가질 수 있음

5. 시사점.

4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또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정부는 학교들에게 제시하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에 관한 지침에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가해자로만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학교폭력을 하게 된 동기와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다시 말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또한 가족 문제, 친구 문제, 경제사회적 문제 등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청소년일 수 있으며 따라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주지함
- 학교폭력 예방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회복적 관점의 접근들 또한 피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사회적 회복 뿐 아니라 가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행동 개선 등을 모두 강조함
- 교육부에 의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Warden Park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하나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 깊은 언어 사용을 조언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가해 청소년 또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고, 보호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적 구도가 아니라 모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가야 하는 청소년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상황과 어려움, 문제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고안해야 함

5. 시사점.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롤모델로 역할 및 전문 역량 강조

-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에 있어 교직원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함. 먼저 교직원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영향 그리고 대처 및 예방 방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예방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는 교직원의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와 개입, 나아가 예방 관련 기술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직원 교육과 연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영국의 사례의 경우, 지역 교육청에서 교직원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고, ABA 등의 전문 민간기관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관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다름과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등을 직접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됨. 따라서 교직원은 학교폭력 관련 지식적 이해, 실천 기술과 역량, 나아가 교직원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와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큼
- 실제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전략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 관계에 대한 롤모델이 되어 주는 것이 여러 전략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5. 시사점.

6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제고 및 청소년의 역할과 역량 강화

- 학교폭력 대응과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청소년임.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저지 및 예방할 책임, 학교를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 책임이 학생들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함.
- 나아가 청소년은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에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영국의 학교들은 또래 지원 전략으로 또래 중재, 또래 경청, 또래 멘토링, 친구 형성, 버디 제도, 사이버 멘토 등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고, 예방적 전략 또는 반응적 전략에 해당하는 학교 위원회, 서클 타임(Circle Time), 소그룹 활동, 지지 그룹 방법 등의 방법들도 또래의 참여와 역할이 주요함. 이처럼 청소년은 학교폭력 문제와 상황을 예방 또는 저지, 완화시키고 피해 청소년, 취약 또는 위험 청소년에게 도움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교실 등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발견, 목격하였을 때 청소년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능동적인 방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구체적인 방어 및 예방 역량을 훈련시켜줄 필요가 큼. 이에 영국 학교들에서는 Bystander Defender Training(방관자에서 방어자로의 교육)을 도입,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영국 학교들의 학교폭력 예방 전략의 실행 현황과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또래 멘토링, 또래 중재, 서클 타임 등 청소년의 역할과 참여가 주요한 전략들의 학교폭력 예방 효과성이 상당한데 반하여 전략의 실행도는 높지 않음을 볼 수 있음. 즉 청소년들을 선발, 교육, 훈련하여 또래 지원 체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 또는 서클 타임이나 소그룹 활동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식과 책임 의식 제고 효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 참여형 전략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5. 시사점.

7 학부모의 공감과 지지, 참여가 병행되어야 함

-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는 학부모의 공감과 지원, 참여 또한 중요함. 영국 교육부는 학교들에 대한 지침에서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정책을 충분히 공유하고 특히 학교폭력 발생시 개입 절차와 내용 등을 명확히 사전 안내할 것을 강조함.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학부모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교의 예방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 영국 교육부 지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의 학교폭력 방지/예방 정책과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안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교육하고,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일에 학부모들이 동참하게끔 해야 함을 설명함. 우수 사례로 소개된 Warden Park 초등학교 역시 학부모 교육과 상담, 학급별 부모 모임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알리고 상호 친절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강조하는 학교의 교풍이 가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8 공공과 민간의 협업

- 영국은 교육부 및 Ofsted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에 관한 학교의 의무를 규정하고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 평가하는 반면 그 정책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각 학교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지침 등을 통하여는 교육과 상담, 장애 청소년이나 성소수자 청소년 등 특정 기술이나 분야 등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 관련 민간 기관(단체)들을 소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부문 간 협력, 학교와 전문 기관(단체) 간 협력을 독려하고 있음

-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집단적 실천(Collective Practice)을 추구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Preventing and Tackling Bullying – Advice for Headteachers, Staff and Governing Bodies.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a). Approaches to Preventing and Tackling Bullying – Case Studies.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b). Bullying: Evidence from LSYPE2, Wave 3 – Research Brie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c). Bullying in England, April 2013 to March 2018 – Analysis on 10 to 15 Year Olds from the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 Ofsted (2005). School Inspection Handbook.
- Thompson, F. & Smith, P. K. (2010).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Anti-Bullying Strategies in Schools. London, UK: Department for Education.

- 영국 공공 부문 정보 웹사이트. http://www.gov.uk
- 영국 법률 정보 웹사이트. http://www.legislation.gov.uk
- Anti-Bullying Alliance 웹사이트. http://www.anti-bullyingalliance.org.uk

토론

영국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정 제 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및 예방 프로그램 토론

1. 토론에 들어가며

손병덕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신 의미있는 내용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정부의 학교폭력의 정의에서부터 학교폭력의 실태 조사 결과,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주신 자료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매우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부, 학교, 민간 등 주체별로 제시하고 있어서 현재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매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방대한 발표 내용 중에서 토론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학교폭력의 정의

발표자는 영국 정부의 학교폭력 정의에 대해 "다른 사람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히고자 의도된 반복적 행동으로, 때로 인종이나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에 관한 특정 집단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신체적 폭행, 놀림과 괴롭힘, 위협, 인신공격, 휴대폰이나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 등을 모두 포함함"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과 일부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이 있다. 특히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학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며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8월에 개정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는 학교의 교육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미한 사안'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체해결

대상이 되는 사안을 법률에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법정 조건은 4가지로 제시되었는데,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학교 내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까지 모두 다루어 실제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로 다가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해학생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를 학생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일반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가해 주제를 「청소년 보호법」에 정의된 청소년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학교폭력의 실태 및 법령 체제

잉글랜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인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 2(LSYPE 2)의 3차년도(2015) 자료 분석 결과, 응답 청소년(만 15-16세 11학년 재학생 10,010명)의 30.2%가 지난 1년 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1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LSYPE 1의 2006년 자료와 비교한 결과, 학교폭력 경험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폭행과 위협, 갈취는 감소한 반면에 인신공격과 사회적 배제는 증가하였고, 새로 사이버 폭력이 대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주된 유형은 언어 폭력 및 무시(89%)이며, 빈도는 주 1회 이상 경험하는 경우(32%)가 가장 많았다. 피해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저연령,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학교 부적응(무단결석, 정학 등)의 경우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및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은 하향 안정세에서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 비율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 폭력보다는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 발달단계와 더불어 학교폭력 유형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 체계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향은 영국의 실태 조사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학교폭력 양상의 변화가 상당히 의미있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을 갖고 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다양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2006년 교육감사법 제89조, 2012년 개정 교육 규정 (사립학교기준) 3부, 2010년 평등법(차별금지법), 2002년 교육법 제175조, 1989년 아동법제47조, 그 밖에 학교폭력이 위협, 괴롭힘 또는 그 외 범죄 등을 수반하는 경우 형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차이는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자법 체계가 갖는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발표자가 제시하고 잇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현재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과 효과가 큰 전략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와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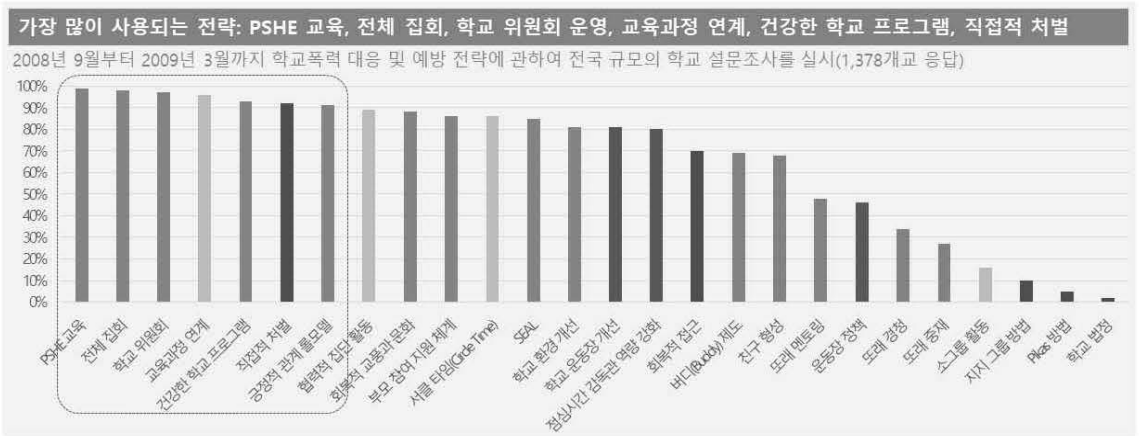

자료 : 손병덕(20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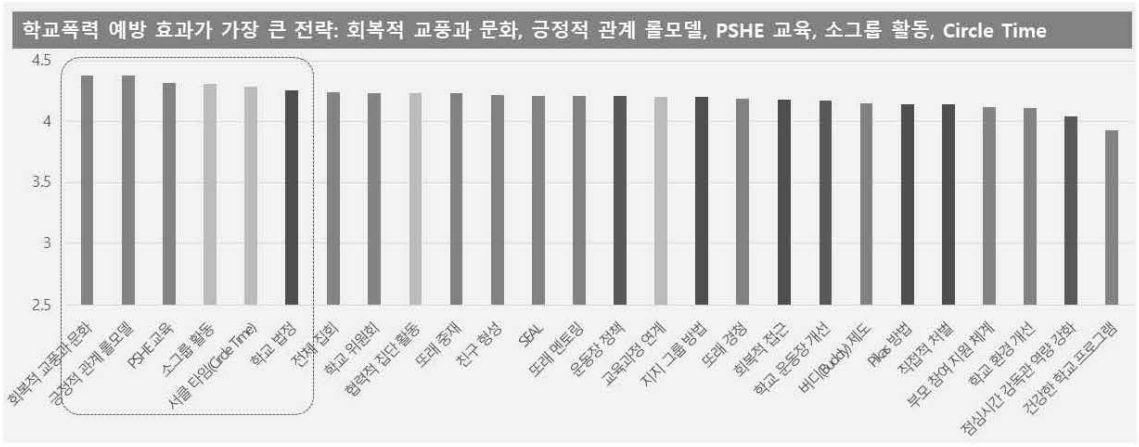

자료 : 손병덕(2019:37)

정제영 외(2019)는 매년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표 1〉 학교폭력 정책 평가 조사 대상

	합계	교원	학생	학부모
2016년도 (4차년도)	73,242명	30,777명	24,640명	17,825명
2017년도 (5차년도)	53,276명	25,731명	16,544명	11,001명
2018년도 (6차년도)	54,361명	28,236명	15,631명	10,494명
2019년도 (7차년도)	54,171명	26,654명	16,368명	11,149명

우리나라의 교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번	분야	문항내용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	2-2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4.06**	4.05	4.08	4.15
2	2-6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 강화	**3.99**	4.01	4.05	4.04
3	4-2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 강화	**3.98**	3.99	4.00	3.98
4	2-7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 강화	**3.98**	3.98	3.99	3.98
5	2-5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3.95**	3.98	4.04	4.03
6	2-3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3.95**	3.98	4.00	4.04
7	3-6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3.95**	3.93	4.02	3.98
8	5-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3.94**	3.94	4.00	4.00
9	4-3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3.94**	3.96	3.97	3.97
10	4-1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3.94**	3.95	3.99	3.99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번	분야	문항내용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	3-2	117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4.06**	4.1	4.13	4.04
2	2-5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4.00**	4.07	4.07	4.1
3	3-1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4.00**	4.06	4.11	4.05
4	2-4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	**4.00**	4.07	4.13	4.19
5	2-2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3.99**	4.02	4.12	4.03
6	4-1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3.97**	4.04	4.08	4.04
7	2-6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 강화	**3.96**	4.	4.05	4.02
8	2-3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3.94**	4	4.13	4.11
9	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	**3.93**	3.99	4	3.83
10	4-3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3.92**	3.98	4.02	3.86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번	분야	문항내용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	4-1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4.15**	4.09	4.12	4.17
2	5-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4.14**	4.03	4.09	4.11
3	2-2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4.14**	4.1	4.11	4.2
4	4-2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 강화	**4.13**	4.07	4.07	4.08
5	5-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4.12**	4.03	4.13	4.15
6	2-5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4.10**	4.09	4.15	4.18
7	2-3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4.08**	4.05	4.10	4.11
8	4-3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4.03**	3.99	4.02	4.04
9	2-4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	**4.03**	3.98	4.08	4.15
10	2-6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 강화	**4.02**	3.95	4.13	4.07

5. 시사점

발표자는 영국의 학교폭력 관련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8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및 학교장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의무와 책임 강화, 둘째, 부가적, 개별적 대응보다 총체적 대응전략, 셋째, 학교폭력의 문제 자체보다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집중, 넷째,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또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롤모델로역할 및 전문 역량 강조, 여섯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제고 및 청소년의 역할과 역량 강화, 일곱째, 학부모의 공감과 지지, 참여가 병행되어야 함, 여덟째, 공공과 민간의 협업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8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처벌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이 '화해와 교우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자체해결 제도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측에서 화해를 종용하거나 피해학생의 동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의 교육심의회로 이관하면서 학교의 책무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변화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 사이에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교육력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감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능력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새로운 제도의 전면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발표

독일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이 유 미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부연구위원 이유미
iamyumilee@nypi.re.kr

목차

독일
Deutschland

1. 독일 학교폭력
2. 학교폭력 교육정책 & 현황
3. 학교폭력 관련법 & 제도
4. 학교폭력 관련기관 & 프로그램
5. 국내 시사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1. 독일 학교폭력

독일
학교폭력

- **1. 독일 학교폭력**
- 2. 학교폭력 교육정책 & 현황
- 3. 학교폭력 관련법 & 제도
- 4. 학교폭력 관련기관 & 프로그램
- 5. 국내 시사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1.1 독일

- **독일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면적: 3,575만 8천ha**
- **인구: 8,351만 7,045명**
- **GDP: 3조 9968억 달러**
  (1인당 GDP: $47,450, 세계 4위)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면적: 1,003만 4천ha**
- **인구: 5,170만 9,098명**
- **GDP: 1조 6194억 달러**
  (1인 GDP: $30,600, 세계 12위)

1.2 학교폭력

독일의 학교폭력

1.2.1 사회 (Past & Present)

P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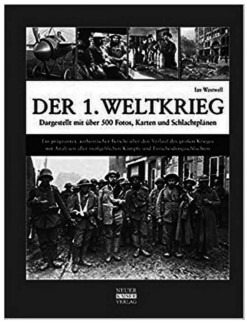

• 제 1차 세계대전
• 1914.7.28 – 1918.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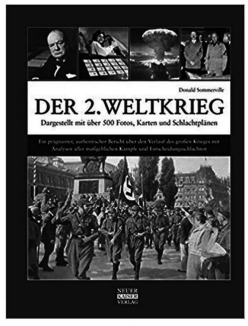

• 제 2차 세계대전
• 1939.9.1 – 1945.9.2

Present

• 난민 (Fluechlings)

1.2.2 문화 (Korea vs. Germany)

(ind: 67)
(pow: 35)

(ind: 18)
(pow: 60)

More individualistic culture

- 독립적
- "나" form: 개인적 관점
- 정체성: 사회적 집단 덜 중요
- 개인 고유의 흥미 에 관심

More collectivistic culture

- 상호의존적
- "우리" form: 집단적 관점
- 정체성: 사회집단 더욱 중요
- 집단의 하모니, 규범 중시

Vertical individualism

- 서로를 다른 존재로 인식
-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분
- 개인적 경쟁 중요

Vertical collectivism

- 개개인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
-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분
- 집단 내에서 개인적 경쟁 중시

Hofstede (2001); Hoppe-Graff & Kim (2005)
Shavitt et al. (2006); Triandis (2001)

1.2.3 교육 (Education System in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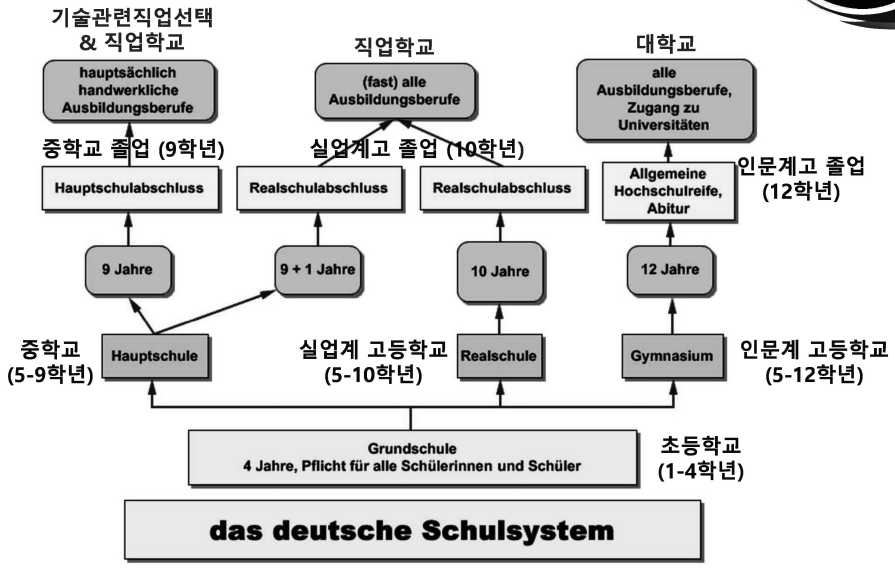

1.3 에어푸르트 총기난사 사건

독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전환점:

'Amoklauf im Erfurter Gymnasiym'

I 사회 II 문화 III 교육

WELT AMOKLAUF IN ERFURT

„Ich hab hier absoluten Ernst"

Veröffentlicht am 26.04.2017 | Lesedauer: 9 Minuten

Von Christina Brause

Robert Steinhäusers Amoklauf in Erfurt am 26. April 2002 war der erste seiner Art in Deutschland

Quelle: Infografik Die Welt

Auf so einen Amoklauf war niemand vorbereitet. Duphorn wird danach immer wieder sagen, dass Erfurt die Nullserie gewesen sei. Alles, was seitdem im Polizeidienst und an den Schulen verändert wurde, geht auf

https://www.tagesschau.de/jahresrueckblick/meldung105302.html

- 2002. 4.26 (대학입학자격시험일) 구텐베르크 고등학교
- Robert Steinhaeuser(19)의 총기난사사건, 17명 사망
- 결석계 위조로 퇴학 & 대학입학자격시험 낙방

- 학폭수준의 심각성 여론화, 국민들의 인식변화시작
- 학폭원인진단 및 해결책모색 위한 다양한 토론회 개최

- 방송의 폭력적 내용 자발적 제한, 무기소지 법률 강화
  by Gerhard Schroeder (총리Bundeskanzler 1995-2005)

2. 학교폭력 교육정책 & 현황

독일
교육정책·현황

1. 학교폭력 교육정책 및 현황
2. **학교폭력 교육정책 & 현황**
3. 학교폭력 관련법 & 제도
4. 학교폭력 관련기관 & 프로그램
5. 국내 시사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2.1 학교폭력 교육정책

독일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의 정책적 목적

- 국가와 지방정부 책임 **"학교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학교"**
- → 안전한 교육환경 (신체적 & 심리적 위협으로 보호)을 조성
  → 학교폭력을 예방 → 학생 교육·사회적 역량을 극대화
  (Guender, 2012: 9)

예방적인 접근이 최우선 & 수평적 상호협력

- → 학교폭력 예방프로젝트를 통하여 학교, 교직원,
  전문가, 지역 내 아동청소년 서비스 실무자,
  학부모와의 수평적 상호협력
  →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대처능력을 증가
  (Schulamt fuer die Stade Muenster, 2008)

2.2 학교폭력 현황

1993-2003 (통계보고서)

Gewalt an Schulen in Deutsch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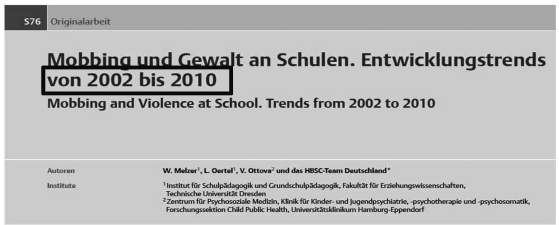

2002-2010 (학술지논문)

2.1.1 학교폭력 통계 (1993-2003)

Abb.1

Raufunfälle je 1.000 versicherte Schüler 1993 – 2003 nach Schul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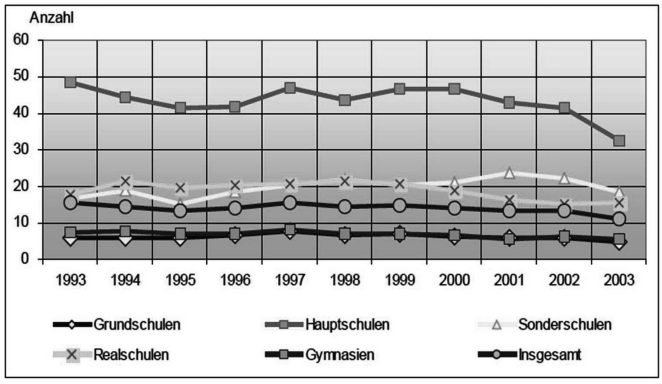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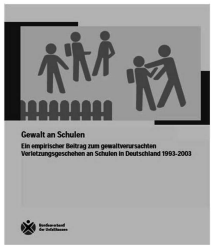

- **1993 → 2003 감소추세**
- **Hauptschulen**
  (중학교-실업계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1993-2003 모두 높음
  (그림1)
- **Hauptschulen**
  남학생 > 여학생 (표11)

Tabelle 11

Raufunfälle je 1.000 versicherte Schüler 1993 - 2003 nach Schulart und Geschlecht

Schulart	Geschlecht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Hauptschulen	Jungen	60,1	55,8	51,9	53,8	60,5	56,1	59,3	57,3	54,4	51,4	39,4
	Mädchen	34,3	29,9	28,0	26,8	29,9	28,3	30,7	33,0	28,3	28,6	24,2

2.1.1 학교폭력 통계 (1993-2003)

Tabelle 1

Raufunfälle und Raufunfallraten 2003 nach Schularten

Schulart	Raufunfälle	Raufunfallrate
	Anzahl	je 1.000 Schüler
Grundschule	15.542	4,9
Hauptschule	36.907	32,8
Sonderschule	7.905	18,4
Realschule	19.931	15,5
Gymnasium	13.009	5,7
Insgesamt	93.295	11,3

Tabelle 3

Raufunfälle 2003 nach Art der schulischen Veranstaltung

Art der schulischen Veranstaltung	Anzahl	Anteil in %
Kinderkrippen-/Hortbetrieb	97	0,1
Unterricht	6.831	8,0
Sport und Spiel	19.495	22,8
Bes. schulische Veranstaltung	2.320	2,7
Pause	48.882	57,1
Aufenthalt innerhalb der Schulanlage	7.798	9,1
Weg außerhalb der Schulanlage	129	0,2
Insgesamt	85.552	100,0

Tabelle 4

Raufunfälle 2003 nach Unfallort

Ort	Anzahl	Anteil in %
Schulhof	34.801	40,7
Turnhalle	15.821	18,5
Klassenraum	13.630	15,9
Flur, Gang	7.798	9,1
Sportplatz	2.352	2,7
Treppenanlage	1.386	1,6
Pausenraum	1.160	1,4
Rest	451	10,1
Insgesamt	85.552	100,0

2.1.2 학교폭력 현황 (2002-2010)

Tab. 1 Täter-Opfer-Typologie 2002–2010 (Angaben in Prozent).

	2002	2006	2010
Unbeteiligte	73,7	77,3	81,4
Täter	13,2	8,8	8,4
Opfer	9,5	11,2	8,6
Täter-Opfer	3,7	2,7	1,6

(HBSC 2002, 2006 und 2010, N = 17 929: 2002 (n = 5 650), 2006 (n = 7 274), 2010 (n = 5 005)

576 Originalarbeit

Mobbing und Gewalt an Schulen. Entwicklungstrends von 2002 bis 2010

Mobbing and Violence at School. Trends from 2002 to 2010

Autoren W. Melzer[1], L. Oertel[1], V. Ottova[2] und das HBSC-Team Deutschland[1]

Institute [1] Institut für Schulpädagogik und Grundschulpädagogik, Fakultät für Erziehungswissenschaften,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2] Zentrum für Psychosoziale Medizin, Klinik für Kinder- und Jugendpsychiatrie, -psychotherapie und -psychosomatik, Forschungssektion Child Public Health, Universitätsklinikum Hamburg-Eppendorf

- 목적: 2002년~2010년 독일 학교폭력 동향 파악
- 도구: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in 2002, 2006, 2010
- 대상: N=17929 (11,13,15세 학생)
- 결과: 가해자 및 피해자 감소, Unbeteiligte 증가
- 결론: 학교폭력예방의 성공 & Educationally deprived background 대상 연구 필요

2.1.2 학교폭력 현황 (2002-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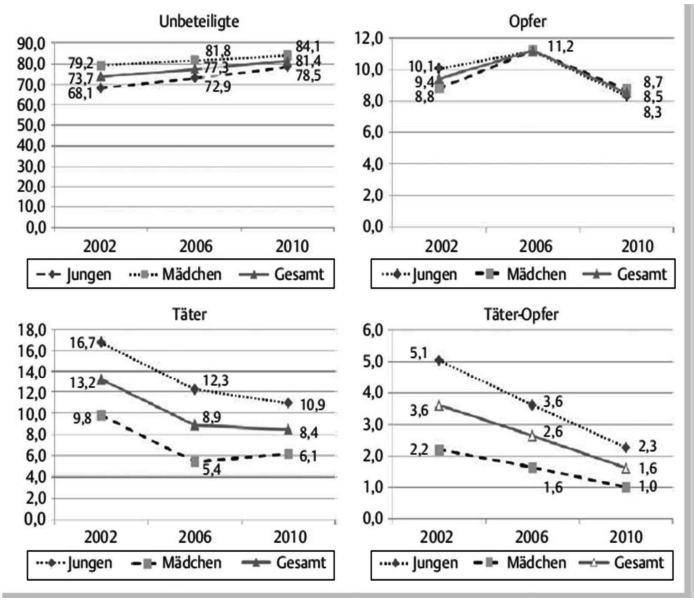

Abb. 1 Täter-Opfer-Typologie nach dem Geschlecht im Zeitverlauf, Anteile in %.

- 2002-2010 학교폭력 감소
- 2006년 여학생 피해자 (Opfer) 증가 후 감소

3. 학교폭력 관련법 & 제도

독일
관련법·제도

1. 학교폭력 교육정책 및 현황
2. 학교폭력 관련 법 & 제도
3. 학교폭력 관련법 & 제도
4. 학교폭력 관련기관 & 프로그램
5. 국내 시사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3.1 학교폭력 관련 법

- **학교폭력과 관련한 단일법 존재 X**
- **실제적인 활동을 위한 근거**
  → 주 단위 학교법 (Schulgesetz)
  → 아동청소년 지원법 (Kinder-und Jugendhilfegesetz, KJHG)

- **학교폭력 예방, 학생 &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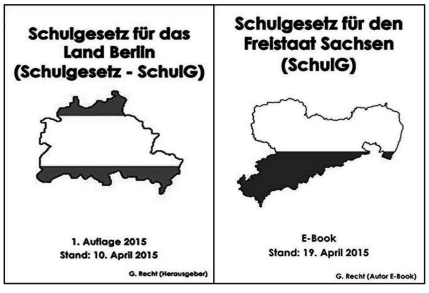

학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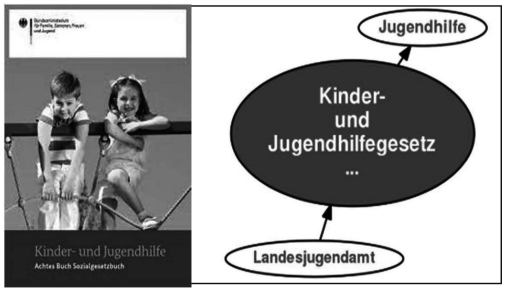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지원법

3.1.1 주단위 학교법 (Nordrhein-Westfalen 주)

- **Nordrhein-Westfalen 주 학교의 책무: 청소년의 범죄 예방**
  (Ministerium fuer Schule und 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 **법적 규정이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관여 X, 전체적인 방향성 제시**
- **<u>학교외부자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조</u>: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학교폭력에 처한 경우 교사, 학교장, 학교심리사, 부모, 외부상담기관들과 긴밀한 연계하에 대처**

Schul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Schulgesetz NRW - SchulG)

1. Auflage 2015
Stand: 23. Januar 2015

G. Recht (Herausgeber)

Kapitel 1

Schul- und Bildungsgesetze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1-1
Schul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Schulgesetz NRW - SchulG)[1]

Vom 15. Februar 2005
(GV. NRW. S. 102)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02. Juli 2019
(SGV. NRW. 223)

https://www.schulministerium.nrw.de/docs/Recht/Schulrecht/Schulgesetz/index.html

3.1.2 아동청소년 지원법

- **Legal basis for the work of the Youth Welfare Office**
- **아동청소년의 복지 및 정신건강 증진**
- **부모교육, 가족을 위한 서비스,**
- **아동청소년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 복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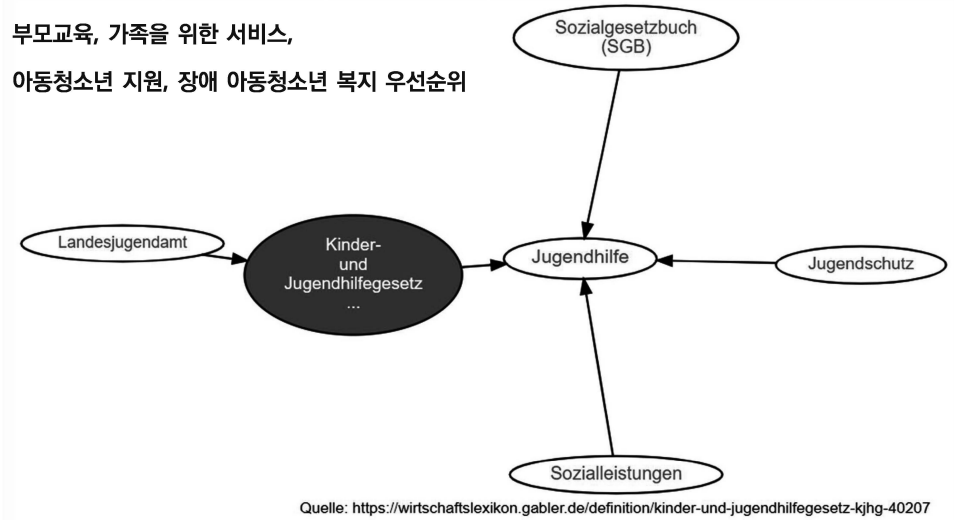

Quelle: https://wirtschaftslexikon.gabler.de/definition/kinder-und-jugendhilfegesetz-kjhg-40207

3.2 학교폭력 관련 제도

의료보험회사

- 각 보험화사마다 대학과 협력하여 연구에 투자
- 주 교육청 & 학교와 연계하여 예방프로그램 실시
- Mobbing과 같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해결책 찾는데 어려움 → **"예방교육만이 해답이다"**
- 가장 밀접한 이해 관계에 놓인 의료보험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주요역할

4. 학교폭력 관련기관 & 프로그램

독일
기관·프로그램

1. 학교폭력 교육정책 및 현황
2. 학교폭력 교육정책 & 현황
3. 학교폭력 관련법 & 제도
4. **학교폭력 관련기관 & 프로그램**
5. 국내 시사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4.1 학교폭력 제공기관 (with Program)

DGUV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Spitzenverband

IAG Report 3/2011
Maßnahmen zur Prävention von Gewalt an Schulen:
Bestandsaufnahme von
Programmen im deutschsprachigen Raum
– Literaturstudie –

4.1.15 Schleswig-Holstein

Name des Programms	Anbieter
AKJS-SH: Handy-Scouts	Aktion Kinder- und Jugendschutz Landesarbeitsstelle Schleswig-Holstein e.V. Schauenburger Str. 36 24105 Kiel Ansprechperson: Kathrin Gomolzig Telefon: +49 (0)431 2606878 Fax: +49 (0)431 2606876 Email: gomolzig@akjs-sh.de oder info@akjs-sh.de
AKJS-SH: Umgang mit Konflikten	Aktion Kinder- und Jugendschutz Landesarbeitsstelle Schleswig-Holstein e.V. Schauenburger Str. 36 24105 Kiel Ansprechperson: Kathrin Gomolzig Telefon: +49 (0)431 2606878 Fax: +49 (0)431 2606876 Email: gomolzig@akjs-sh.de oder info@akjs-sh.de
Eigenständig werden	IFT-NORD Institut für Therapie- und Gesundheitsforschung gemeinnützige GmbH Harmsstraße 2 24114 Kiel Telefon: +49 (0)431 570290 Fax: +49 (0)431 5702929 Email: info@ift-nord.de
Prävention im Team (PIT)	Institut für Qualitätsentwicklung an Schulen in Schleswig-Holstein Schulische Koordination PIT Schreberweg 5 24119 Kronshagen Ansprechpersonen: Petra Fojut Telefon: +49 (0)431 5403132 Fax: +49 (0)431 5403101 Email: petra.fojut@iqsh.de Anne Keller Telefon: +49 (0)431 686802 Email: annekeller@freenet.de

4.1.16 Thüringen

Name des Programms	Anbieter
HAUEN ist DOOF	HID – HAUEN ist DOOF Verein für Gewaltprävention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e.V. Thomas-Mann-Str. 25 07743 Jena Telefon/Fax: +49 (0)3641 470076 Email: info@hauen-ist-doof.de Web: www.hauen-ist-doof.de
Prävention im Team (PIT)	Thüringer Ministerium für Soziales, Familie und Gesundheit Landesstelle Gewaltprävention Werner-Seelenbinder-Straße 6 99096 Erfurt Von Aggression bis Delinquenz – Prävention und Intervention im Team Ansprechpersonen: Renate Treyße Telefon: +49 (0)361 3798781 oder +49 (0)361 3785149 Email: Renate.treysse@tmsfg.thueringen.de Ingo Wachtmeister Telefon: +49 (0)36458 / 56268 Email: iwachtmeister@thillm.thueringen.de

4.2 학교폭력 프로그램 (by 발달단계)

Alter	0 - 5 Jahre	5 - 10 Jahre	10 - 18 Jahre
	Kindheit		Jugend
Quartier / Nachbarschaft / Vereine			
	- Balu und Du	- PaC - Prävention als Chance	- fairplayer.com - Fit for Difference - Training mit Jugendlichen
Familie			
	- Eltern-AG - Ostapje - Starke Eltern - Starke Kinder - Triple P - wir 2 Bindungstraining	- Gordon Familien Training - Starke Eltern - Starke Kinder - STEP - Triple P	- Familien stärken - Gordon Familien Training - Teen Triple P - Starke Eltern - Starke Kinder
Bildungseinrichtung (Kita / Schule)			
	- Papilio - EFFEKT ® - Lubo aus dem All - Kindergarten plus	- buddY - Eigenständig werden - Faustlos - Klasse 2000 - KlasseKinderSpiel - Lubo aus dem All - PFADE - Verhaltenstraining im Kindergarten | ... für Schulanfänger | ... in der Grundschule |	- fairplayer.manual - buddY - Lions-Quest - Medienhelden - Fit for Life - Fit for Differences - JobFit-Training - Mobbingfreie Schule - Olweus

4.3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EBS 세계의 교육현장)

세계의 교육현장 – 학교 안에 해답이 있다.
독일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 **칼 슐레** (Die Karlschule)
- Hauptschule in Hamm, Nordrhein-Westfalen
- 중학교 5-9/10학년

- **베른부어거 슈트라쎄 공동학교**
  (Bernburger Strassee Geminschaftshauptschule)
- Gemeinschaftshauptschule in Duesseldorf, Nordrhein-Westfalen
- 공동학교 5-12/1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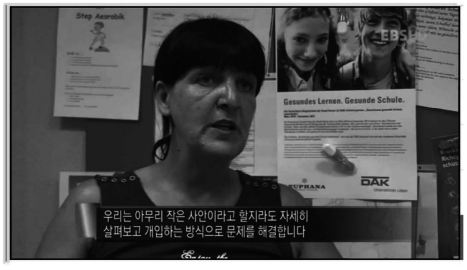

학교스테이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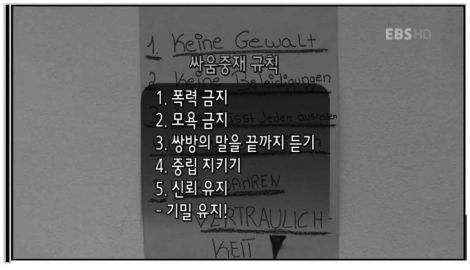

싸움중재 프로그램

https://www.ebs.co.kr/tv/show?prodId=7768&lectId=3101148

세계의 교육현장 – 위기청소년의 새로운 가족, 하임. 독일의 학교폭력 사후대처

- 기숙형 아동·청소년 대안시설
- Heim in Oberhausen, Nordrhein-Westfalen
- 학교폭력 사후대책=제 2의 예방
- 120Euro/Person

하임-집중거주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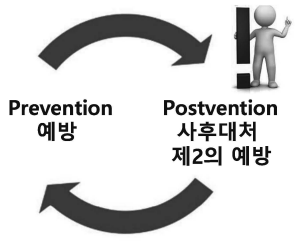

4.4 학교폭력 프로그램 (Achtung in der Schule)

Achtung in der Schule - Ausstellung zu Gewalt in der Sch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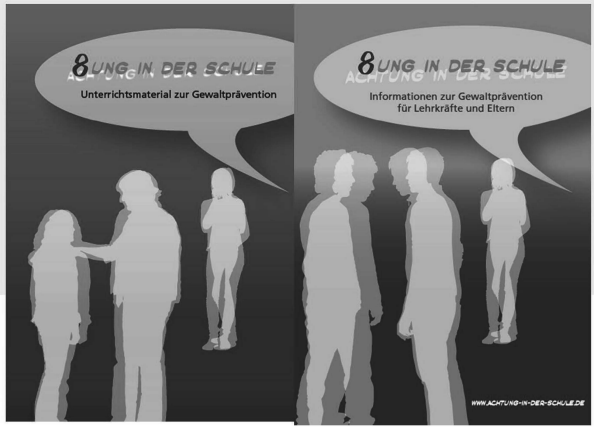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프로젝트 기관 (Project Partner)	담당기관 홈페이지
„Berichte uber Gewalt – Tater und Opfer erzahlen“	Unfallkasse Nordrhein Westfalen, Unfallkasse Sachsen, Theater Till	www.unfallkasse-nrw.de www.unfallkassesachsen.de
fairplayer.manual	fairplayer e. V., Bremen, Freie Universitat Berlin und Unfallkasse Freie Hansestadt Bremen	www.fairplayer.de
Klasse2000	BKK Bundesverband, BKK Landesverband Ost, Verein Programm Klasse2000 e. V., Ministerien, Landeszentralen fur Gesundheit, AOK Hessen, Gmunder ErsatzKasse, Anschub.de, OPUS NRW	www.klasse2000.de
Mediatorenausbildung	Unfallkasse Rheinland-Pfalz	www.ukrlp.de
PaC – Pravention als Chance	Landeskriminalamt Niedersachsen, Gemeindeunfallversicherungsverband Hannover, Landesschulbehorde in Hannover	www.pac-programm.de
Qualitatssiegel gewaltfreie Schule	Praventionsrat Bremerhaven, Universitat Bremen und Unfallkasse Freie Hansestadt Bremen	www.gewaltfreie-schule.com

PaC
Prävention als Chance

- **Prevention as a chance!**
- **학교폭력예방 실천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프로그램**
- **“Gruene Liste Praevention” 포함, 독일범죄예방상 수상 (2007)**

-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예방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연구기관**
  (예: 주 범죄수사국, 하노버 사고보험협회, 하노버 정부기관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 **프로그램 목표:**
  - 사회성 기술 향상
  - (또래)그룹, 학급, 학교 환경 개선
  - 폭력 및 학교규칙 위반 감소
  - 부상 및 재산피해 감소
  - 지속 가능한 학교폭력예방에 초점

In Kooperation mit:
Niedersächsisches Kultusministerium
LANDESKRIMINALAMT NIEDERSACHSEN
Niedersächsische Landesschulbehörde
GUVH | LUKN
Gemeinde-Unfallversicherungsverband Hannover
Landesunfallkasse Niedersachsen

- **PaC팀** (관리자 & 운영팀 & 프로그램 담당자)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
  →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이며 네크워크화된 전문적인 프레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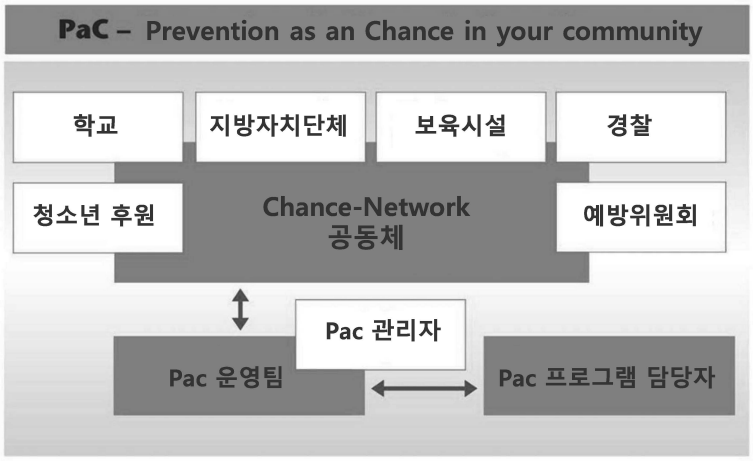

https://pac-programm.de/ueber-PaC/Was_ist_PaC.php

4.5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지도방안 및 사례

연방정부

- **학교폭력 자치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역할수행 (예: 학교폭력 학술연구)**
- **연방가족여성청소년부: 학교폭력을 중요과제로 지원**
- **'어린이-청소년 친화적인 독일'** (www.kindergerechtes-deutschalnd.de)
- **'폭력대응조직 프로그램'** (www.polizei-berating.de)

주정부

- **프랑크푸르트시 범죄 및 폭력예방위원회** (www-gewalt-sehen-helfen.de)
- **'Cool sein, Cool bleiben' 폭력상황 대응교육 역할극**
- **'School-Theatre-Studio' 갈등 조정 대응방법 교육**

사회단체

- **'폭력예방 프로젝트 정보공유'** (www.jugendgewalt-vorbeugen.de)
-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www.nummer gegen kummer.de)

마) "인성교육 중심 학교"

❀ Gymnasium Oberursel

학교개요	주 소	Add.JohnF.KennedyStr.7.55122Mainz
	홈페이지	http://www.gs-dr-martin-luther-king.de/index.html
	◦ 1522년 라틴 학교로 세워짐. 1917년 고등학교로 등록 ◦ 5~13학년 구성되며 교사 130명, 학생수 약 1,600명	
주요연수 콘텐츠	학생 주도의 그룹 활동 활성화	
특징	◦ 학생 주도의 그룹 활동 - 음악과 외국어 교육 뿐 아니라 수학분야에서 상당한 명성 - 독일의 다른 학교들처럼 학생 주도의 그룹 활동이 활성화 ◦ 다양한 프로젝트 적극 참여 - 왕따, 학교폭력, 인종차별에 대한 행동 규제 - 정서 건강 교육 실시 - 음악과 Bilingual 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 - 5-6학년은 일주일 2시간의 음악수업은 필수적으로 이수 - 고학년은 2~3시간 기본 코스와 5시간의 퍼포먼스 코스에 참석함 -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7학년부터는 음악반이 개설 - 1956년 현재의 Gymnasium Berursel로 명명됨 - 1988년 현재의 학교 세워짐	

주요 프로그램	◦ 영국 여행 기회 제공, 견문 넓혀 - 학생들은 음악 교육을 통하여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며 음악적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은 그 방면의 대학 진학을 하도록 지원하며 일년에 2회 콘서트 개최 - 6학년부터 역사, 지리는 영어로 진행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이 다양함 - 8학년들에게는 문화적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차원에서 영국 여행의 기회도 제공 - 음악과 외국어 교육 뿐 아니라 수학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학교이며 독일의 다른 학교들처럼 학생 주도의 그룹 활동이 활성화 되어있음
관련자료	
CONTACK	◦ 담당 : Mr. Volker robbers ○ Tel : +49 (0)6171-637150 Fax : +49 (0) 6171-637199 ○ verwaltung@oug.hochtaunuskreis.net

5. 국내 시사점 –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독일
국내시사점

1. 학교폭력 교육정책 및 현황
2. 학교폭력 관련 법 & 제도
3. 학교폭력 관련기관
4. 학교폭력 프로그램
5. **국내 시사점**-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5.1 요약

1. 독일 학교폭력

- [학폭] 사회상황 + 문화풍토 + 교육현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

2. 학교폭력 교육정책 & 현황

- [정책] 안전한 교육환경 → 학교폭력예방 → 학생의 사회적 역량 극대화
- [현황] 학교폭력사안 지속적인 감소추세 (1993~현재)

3. 학교폭력 관련법 & 제도

- [법] 주단위 학교법/아동청소년 보호법: 학교외부자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조
- [제도] 의료보험회사에서 대학과 협력하여 연구에 투자

4. 학교폭력 관련기관 & 프로그램

- [기관]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협력
- [프로그램] 학교스테이션, 싸움중재, 하임, PaC, Actung in der Schule 등

5.2 함의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 측면

- 학교폭력 서비스 대상 확대 (가해자 & 피해자 + α)
- 학교폭력 예방교육 서비스 대상 확대 (학생, 학부모, 교사 + α)
- 학교문화 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필요

- 다차원적 총체적 접근의 통합 필요 (국가수준 + 학교수준 +지역사회수준)
- (Current in Korea: Wee Project, CYS-net, 117 ; 어울림 프로그램)

- 교육기관+연구기관+지역사회 프로그램 모델 구안
- 다학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실시
- 지속적인 검증 및 평가를 통하여 정책과 서비스의 실효화 기대

- 학교폭력 재정확보에 국가의 책무 강조
  (current: 각 학교의 예산 여부에 따라 상이)

5.2 함의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측면

-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 안전한 학교환경 증진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 구안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x) → "아이가 우물에 빠지기 전에"

- 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 홍보를 위한 국가차원 + 지역사회 수준의 홍보 필요
- 개입이 필요한 취약대상 학생, 다문화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검토 제안

- 학교폭력프로그램 구안에 '학생' 포함제언
- 학생용, 부모용, 교사용 프로그램 (+ α , 학교직원)
- 회복적 접근에 근거한 프로그램 강화필요
  (처벌중심이 아닌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구체적 반응전략 프로그램)
-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및 평가

5.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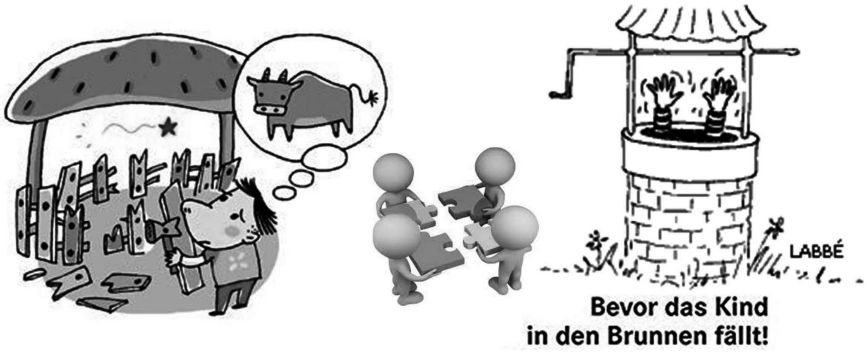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이유미

iamyumilee@nypi.re.kr

토론

독일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이 민 희 교수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독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토론문

독일 학교폭력의 역사와 배경

독일은 발제자께서 언급해주신 것과 같이 세계 양차대전의 발발국이자 패전국으로 독일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노동력의 부재로 외국으로부터 많은 노동자들이 독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들의 2세대, 3세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0년 독일이 통일한 직후부터 동독지역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구 동독 청소년의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 청소년에 대한 극우적 폭력은 테러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통일 직후 1990년 동독지역에서의 실직율이 70%에 가까워 거의 공황에 가까운 실업상태가 전개되자, 미성숙한 동독청소년들은 외국인 청소년들을 폭력의 우선 대상으로 표적한 것이다(Wahl, 1997: 21). 1991년~1996년 사이에 구 동독의 대도시인 Dresden에서는 절도와 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806%의 증가율을 보였다(G. Brenner, 1997:254~56).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일은 1993년 독일 전국의 지역사회 청소년사무소(Jugendamt)에 각 지역의 관할을 넘어서서 학교, 외국인단체, 청소년 민간단체, 경찰 등 지역사회 청소년관계자 모두가 청소년폭력과 외국인폭행에 대한 대책 시행을 위한 작업그룹 "원탁"(Runde Tische)을 만들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원탁은 당시 독일연방수상인 Helmut Kohl이 주재하여 독일 전역의 교회 대표자들과 민간복지단체들, 지역사회유명단체들, 그리고 청소년폭력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청소년폭력에 대한 시민전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형성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이러한 계획은 당시 독일연방정부의 '여성·청소년부(部)'에서 개발되어 시행되었는데, 1995년~1996년 말까지 연방정부의 모델로서 '지역사회 내 폭력예방과 폭력추방' 프로젝트는 비록 초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사회에 계속 전달하여 그 효과가 진작되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책

발제자의 발표에 의하면 1993년~2003년까지의 독일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대체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한 주요학교에서의 실태만을 비교하면 1993년에 1000명 중 약 16명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으나, 2003년에는 약11명 정도로 빈도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2004년 11.6명에서 2015년에는 8.7명으로 1993년에 비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Pfeiffer, Baier & Klienm, 2018: 22)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18년 4월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독일 전역에서 약 32,9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1,0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황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그동안의 비폭력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의 교육이 효과를 보았으나, 최근 미디어로부터의 자극적인 폭력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폭력이 학습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Zeit online, 2018)

발제자의 발표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있듯이 독일의 학교폭력 대책의 핵심 행동원칙은 역시 "예방"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의 모든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예방적 조치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독일은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관련 시설, 기관, 단체들이 상호 수평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비폭력적 '안전'과 '건강'한 정서적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학교폭력 대처 현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독일은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고, 보험이 생활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에 개입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예방교육만이 답이다"라는 모토로 주 교육청,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스템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독일 학교폭력 대책의 시사와 함의

독일에서의 학교폭력 원인은 일반적인 발달과정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기의 일탈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많은 부분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주로 독일학생과 이주배경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의 통일 직후에는 독일학생이 주로 가해자였지만, 2015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학생이 가해자이고 독일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27.2%인 반면, 독일인이 가해자이고 외국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는 13%로 조사되어(Pfeiffer, et al., 75) 경제적, 사회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폭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9년 조사(김영지 외, 2019)에 의하면 학교에서 1년 중 폭력의 피해 경험은 전국 초·중·고 9,000명 이상의 응답학생 중 욕설과 모욕(15.3%), 따돌림(5.2%), 신체적 폭력(7.8%), 성 희롱 및 추행(4.0%)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욕설과 모욕(15.5%), 사생활 유포(5.0%), 따돌림(1,9%)로 드러났다. 2013년~2019년 한국 학생에서의 학교폭력 증감 추이는 대체로 2016년 전후로 낮아지다가 이후로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에게서 물리적 폭력은 2011년에 6.5%에서 2019년 18.6%로 대폭 상승하여 주목할 만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원인은 독일과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다문화사회가 형성된지 그리 오래지 않아 아직은 이주배경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에 폭력적 대립이 독일과 같이 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달리 초등학생부터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심한 경쟁에서의 스트레스로 공격적인 성향이 높고, 희생자를 찾아 가해함으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이상심리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은 독일과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차원의 제도나, 비폭력적이고 안전하며, 정서적인 건강을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되면서, 제도적으로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접근을 달리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을 불행하게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순수한 심성을 해치는 것은 발달과정에서 지나치게 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넣는 교육제도와 폭력에 가까운 학부모들의 개입이다. 현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독일과 같이 대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어야 중등교육과정의 평준화 정책도 의미와 실효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대학의 서열화를 점차 완화하여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의 대학교 평준화가 있어야 학교폭력의 수위도 낮아지고, 학부모들의 폭력적 개입도 사라질 것으로 확신하다. 그 수준이 될 때까지 학교는 발제자가 독일의 여러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참고로 잘 제시했듯이 다양한 학교폭력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인권적 차원에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가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성공적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체험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역량과 정서적 순화, 즐거운 놀이 등을 통해 학교의 생활과 문화가 즐겁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하여 목표그룹으로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 지원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이자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전에서 신체적 폭력과 성 폭력 및 추행의 저 연령화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어 미디어교육과 성교육이 학교폭력예방교육 차원에서 초등교육과정부터 조기에 도입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이미영(2019).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Brenner, G.(1997), "Neue Diskussion über Jugendkriminalität," *Deutsche Jugend,* 97/6(München : Juventa), pp.254~256.

Pfeiffer, C., Baier, D. & Kliem, S.(2018). Zur Entwicklung der Gewalt in Deutschland. Schwerpunkte: Jugendliche und Flüchtlinge als täter und Opfer. Zürich: Zürich Fachhochschule für Angewandte Wissenschaten.

Wahl, K.(1997). Gewalt und abweichendes Verhalten der Jugendlichen nach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아태지역연구원, 1997년 한독국제학술세미나, 통일 후의 청소년문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대비, 11~28.

Zeit online(2018). Kriminalität an Schulen nimmt zu. https://www.zeit.de/index.(2019. 12.06인출)

발표

캐나다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홍 경 선 교수
군산대학교 교직과

캐나다 학교폭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년 12월 12일
군산대학교 홍 경 선

목 차

Teaching & Learning

1. 캐나다의 학교폭력 현황
2. 학교폭력 관련 법 및 제도
3. 학교폭력 관련기관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5. 시사점

1. 현황

Teaching & Learning

- 1990년대 이전
  - 학교폭력이 캐나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과함
  - 세계건강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조사결과
    - 35개국 중 26위
  - 기타 연구 결과: 미국보다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을 깨달음

➔ 건전한 인간관계, 상호존중, 사회적 책임감, 시민의식을 증진해야 함

1. 현황

Teaching & Learning

- 1990년대 초부터 연구 시작
-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문제점
  - 학교와 교육청이 각각의 방식으로 현황 파악, 전혀 보고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 온타리오와 노바스코샤 두 지역만 학교폭력 통계자료를 교육부에 보고
  - 부정확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
  -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폭력을 줄이는데 가장 필수적인 첫번째 절차
- CBC 조사

1. 현황

Teaching & Learning

- CBC 조사
  - 2019년 9월 설문조사
    - 5000명 학생: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캐나다 인구를 대표한 사례수 표집
    - 응답자의 반인 14~17세는 학부모 동의 획득
    - 18~21세는 학교경험이 신선한 젊은 성인
  - 결과
    - 41% 남학생: 고등학교 때 신체적 공격을 경험
    - 26% 여학생: 학교에서 성적 접촉 경험
    - 언어폭력: 대서양지역, 평원지역 학생 > 도시지역 학생
    - 원주민 학생들이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경험

1. 현황

Teaching & Learning

- CBC 조사
  - 조사결과로 제시한 학교폭력 문제점
    1. 사건의 심각성 부정
    2. 효과 없는 감독: 감독체계 미비, 보도 부재
    3. 사례 축소: 실제 사건 수와 보고의 불일치
    4. 학교 평판 및 명성 악화에 대한 두려움
    5. 낮은 공공 책무성: 교육청과 지역 교육의회 등의 감독체계 부실과 공공 책무성이 낮음

2. 관련 법 및 제도

Teaching & Learning

2. 관련 법 및 제도

Teaching & Learning

- Public Safety Canada
  - 국가안보, 범죄대응, 위기관리, 국경관리 등 담당
  - N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y
    - 범죄예방적 접근을 적용하여 범죄와 희생을 감소시키는 action plan을 정립
    - 사전대책적 접근

    ➔범죄예방 노력에 필요한 자원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조직을 지원
  -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연구 진행

2. 관련 법 및 제도

Teaching & Learning

-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연구 진행
  - 학문적 연구로부터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
  - 반폭력중재안의 실제적 적용을 검증
  - 이론과 실제 적용을 비교하여 후속연구 제안
  - 실제에 적절한 실행적 요소를 제시
  - 예방도구와 물품 개발 지원 및 보급

2. 관련 법 및 제도

Teaching & Learning

- 정책 및 제도
  - 연방 형법에서 cyberbullying을 포함함
  - 각 주에서 폭력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모든 주에서 법제화 하거나 정책으로 제안 하고 있음

2. 관련 법 및 제도

Teaching & Learning

- Bullying and the Ontario Law
  - Bill 13(법안 13)
    - Accepting Schools Act, 2012
    - 괴롭힘 등에 대한 수정 교육법
    -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사례 조치와 예방을 위해 교사, 학교, 교육위원회(교육청), 기타 학교 업무 종사자, 그리고 장관이 해야할 의무와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학교 관계자들의 의무
    -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학교 staff은 학교분위기에 부적 영향을 주는 사례를 보고하고 대처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

2. 관련 법 및 제도

Teaching & Learning

- Bullying and the Ontario Law
  -Bill 13(법안 13)
  - 학교 관계자들의 의무
    - 교실/학교 차원
      - 폭력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학교교장에게 보고해야함
    - 교육위원회 차원
      - 폭력예방 및 중재안 관련 정책과 지침 마련
      - 중재 및 예방 활동 계획을 위한 조사와 상담(컨설팅)
      - 중재와 예방 계획의 실행과 정기적 검토
      - 중재와 예방 활동
    - 장관 차원

2. 관련 법 및 제도

Teaching & Learning

- Bullying and the Ontario Law
  -Bill 13(법안 13)
  - 폭력 발생 시의 대처
    - 교실/학교 차원
      - 학교장은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를 선생님, 교육청과 의사소통 해야함
      - 폭력당사자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만 한다
        - 괴롭힘/사이버불링 사건
        - 피해의 상태
        - 사건에 대응할 징계조치
        - 피해학생 지원 내용

3. 학교폭력 관련기관

Teaching & Learning

- PREVNet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연구자들(130)과 관련기관(62)들의 협력체

- PREVNET의 목표
  -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 연구, 훈련과 정책 제/수정 등을 담당
  - 괴롭힘으로 인한 폭력 근절

PREVNet

- Promoting Relationships and Eliminating Violence Network
  - 3 key messages
    - 폭력은 잘못된 것이고 해로운 것이다
    - 폭력은 관계적 문제이다
    - 관계를 증진시키고 폭력을 제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 건전한 인간관계, 상호존중, 사회적 책임감, 시민의식을 증진해야 함을 강조

4.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Teaching & Learning

- The Fourth R curriculum
  - 학교폭력을 포괄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관계를 증진하도록 고무하는 프로그램
  - Youth Relationships Project (YRP)를 통해 개발된 폭력예방 프로그램
  - 잘못된 대우와 폭력적 가정배경을 경험한 학생들을 위해 개발
  - 청소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발. 청소년들로 하여금 삶을 독특한 환경과 도전으로 간주하게 함
  - 2001년 이래로 온타리오 학교의 많은 학교에서 실행되어 왔으며 다른 프로그램보다 좀더 성공적으로 간주됨

4.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Teaching & Learning

- The Fourth R curriculum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위기에 닥쳤을 때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2배 이상 협상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온타리오 주의 9학년 ~10학년의 교육과정 중 건강체육교육으로 권장되고 있음

4.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Teaching & Learning

- Together We Light the Way(TWLTW)
  - 학교관련자, 학생, 학부모와 함께 지역공무원, 경제계 인사, 그리고 근로자 그룹들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보호적 학습커뮤니티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이 프로젝트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NCPC의 기금을 받아 온타리오 주의 Whitby 시의 Durham 교육청이 개발함
  - 존중, 커뮤니티 참여, 건강한 삼, 학부모 참여,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때 요청되는 의사결정기술과 같은 몇가지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장, 교사, 기티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였다.

4.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Teaching & Learning

- Together We Light the Way(TWLTW)
  - 3년간의 실행 연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 중 4분의 3의 학교에서 60% 이상 폭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존중 문화 ” 의 새로운 지평이 형성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온타리오 교육부에서는 교사재교육과정에 이 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활용과 효과가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Emerging Consensus

Teaching & Learning

- Whole School Approach
  - 폭력예방문헌을 살펴보면 whole school approach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 주요 원리
    - 강한 교사와 성인 리더십, 강한 학생-교사 연대감: 학교에 애착이 강한 학생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덜 겪으며, 교육적 결과물이 좋음. 안정감을 더 느끼며 수용적임
    -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행위 기준(규범)
    - 어른들의 인식과 참여

Emerging Consensus

Teaching & Learning

- Whole School Approach
  - 주요 원리
    - 효과적인(초점화되고 강력한) 수퍼 비전
    -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와 관심
    -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아이들 참여
    - 다양한 위험적/보호적 요인을 다루어야 함
    - 초기와 장기간의 중재안 마련
    - 성과 특정 나이, 그리고 사회적기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5. 시사점

Teaching & Learning

- 학교폭력을 범죄로 보고 있음
  - 캐나다 안보국 산하
  - 국가범죄예방센터에서 주관
- 연구와 실제적 검증을 추구함
  - 국가범죄예방센터에서는 프로젝트 펀드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관련 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뿐 아니라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며 검증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운영하고자 함

5. 시사점

Teaching & Learning

- 학교폭력 발생을 “인간관계”의 문제로 규명하고자 함

  ➔폭력과의 전쟁 대신에 관계를 좋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건전한 인간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가장 핵심 사항
  - 한 편에는 훈육이 있어야 하나 다른 한편에는 가해학생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지내는 법에 대하여 많이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토론

캐나다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김 성 기 교수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캐나다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

1. 실태에 대하여

1) '폭력경험'의 의미

학교폭력 현황에 관한 진술 중 "원주민 학생들은 폭력의 모든 영역에서 원주민이 아닌 학생보다 더 높은 폭력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진술이 있는데 원주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함. 또한 '폭력경험이 있다'는 것이 피해경험인지, 가해경험인지 궁금함

2) 피해율 결과의 해석

또한 학교폭력 조사를 실시한 결과 41%의 남학생이 고등학교 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하고 26%의 여학생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여서 선뜻 이해되지 않음. 우리의 경우에는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3.6%이고, 중학교는 0.8%,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0.4%인데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41%의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은 거의 100배에 달하는 것인데 놀라운 수치라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즉 실제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지(사실의 문제), 아니면 우리나라의 실태조사 항목과 다른 항목이라서 그런 것인지(평가의 문제), 아니면 사소한 접촉까지도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것인지(인식의 문제) 궁금함. 실제 그 조사 항목을 제시해 주었으면 함.

3) 학교급별 실태

CBC에서 조사한 것은 14~21세의 5,000명을 표집하여 조사했다고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배제된 것으로 보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음. 즉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초등학교의 피해율이 고등학교의 피해율보다 8배 이상 높음. 이런 현상은 일반적 현상일 것으로 예상됨. 혹시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것은 없는지, 초등학교 맞춤형 대책은 없었는지 궁금함.

2. 학교폭력관련법에 대하여

캐나다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대책적 접근'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사안이 발생하고나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봄.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2020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캐나다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함.

3. 폭력예방도구와 물품에 대하여

NCPC가 "폭력예방도구와 물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와 물품을 개발한다는 것인지 궁금함. 예컨대,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동기구 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나무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쓰이는 그림판 같은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함.

4.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 대하여

NCPC의 후원으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그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The Fourth R curriculum, Together We Light the Way"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함. 현재 우리나라에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행복나무 프로그램, 어깨동무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개별 교사의 의지가 크지 않는 한 실제로 적극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교사들의 참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함.

아울러 연구결과로서 "Whole School Approach"를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함.

발표

미국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박 선 영 교수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미국의
학교폭력예방 교육 정책

박선영(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I. 정의 & 현황

- 2009년 반-불링 테스크포스
- 마약, 갱, 무기 =학교폭력
- 괴롭힘 = "불링(bullying)"
- 불링: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원하지 않은 공격적인 행동이다. 반복적이고, 반복적일 가능성이 있다"(연방정부 stopbullying.org)
-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연방 교육통계청+ 법무부
- 2017년: 공립학교에서 매주 발생하는 불링은 12%
- 공립학교의 12%가 1주일에 최소 한번 학교나 학교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 사이버 불링이 발생.
- 12~18세의 학생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불링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20%
- 15%가 사이버 불링 피해를 경험

II. 법 & 제도

- 연방법: 반불링법은 없음
- 1994년: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법(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 민권법(civil right act) 위반 : 차별적 괴롭힘
-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 종교 등에 기반을 둔 불링 행위일 때
- 민권법에 의거하여 연방의 자금을 지원받은 학교(대학 포함)은 차별적 괴롭힘 행동에 대응할 책임을 가진다.
- 만약 학교 내에서 상황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 연방 교육부 혹은 미 연방 법무부 내의 시민 권리국(Civil Rights Division)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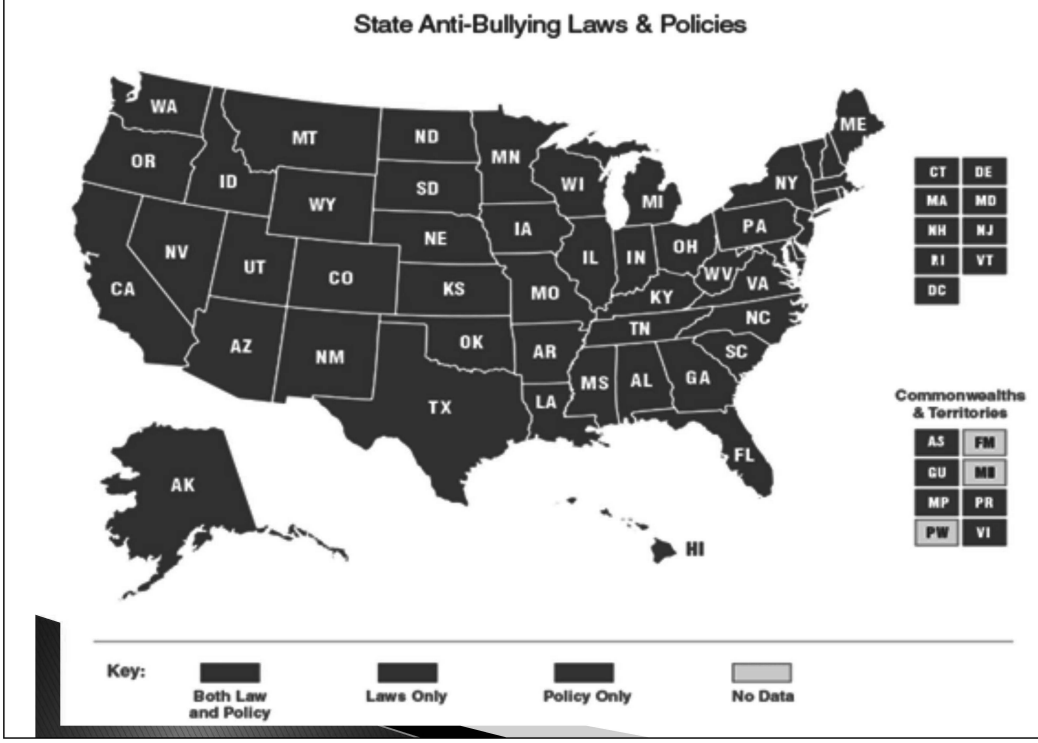

일리비아	2009	포함	없음
일리스카	2006	비 포함	없음
아리조나	2005	포함	없음
알칸사스	2003	포함	없음
캘리포니아	2003	포함	Office of Safe Schools
콜로라도	2001	포함	Colorado School Safety Resource Center
코네티컷	2002	포함	Safe Schools and Communities Coalition
델라웨어	2007	포함	없음
플로리다	2008	포함	Office of Safe Schools
조지아	1999	포함	School Safety Project
하와이	2011	포함	없음
아이디호	2015	포함	없음
일리노이	2007	포함	없음
인디애나	2005	포함	Indiana School Safety Specialist Academy
아이오와	2007	포함	없음
캔사스	2007	포함	없음
켄터키	2008	포함	Kentucky Center for School Safety
루이지애나	2001	포함	없음
메인	2005	포함	없음
메릴랜드	2005	포함	없음
메사추세츠	2010	포함	없음
미시건	2011	포함	없음
미네소타	2007	포함	없음
미시시피	2001	포함	Division of Safe and Orderly Schools
미주리	2010	포함	Missouri Center for Safe Schools
몬타나	2015	포함	없음
네브라스카	2008	포함	Nebraska School Safety Center
네바다	2005	포함	없음
뉴햄프셔	2000	포함	없음
뉴저지	2002	포함	없음
뉴멕시코	2006	포함	없음
뉴욕	2010	포함	New York State Center for School Safety
노스캐롤라이나	2009	포함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노스다코다	2011	포함	없음
오하이오	2007	포함	Ohio Resource Network for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오클라호마	2002	포함	없음
오레건	2001	포함	Institute on Violence and Destructive Behavior
펜실베이니아	2007	포함	Center for Safe Schools
로드아일랜드	2003	포함	없음
사우스캐롤라이나	2006	포함	South Carolina Center for Safe Schools
사우스 다코다	2012	포함	없음
테네시	2005	포함	Tennessee School Safety Center
텍사스	2005	포함	Texas School Safety Center
유타	2008	포함	없음
[illegible]	2004	포함	없음
버지니아	2005	포함	Virginia Center for School Safety
워싱턴	2002	포함	Washington State School Safety Center
웨스트버지니아	[illegible]	포함	없음
위스콘신	2010	비 포함	없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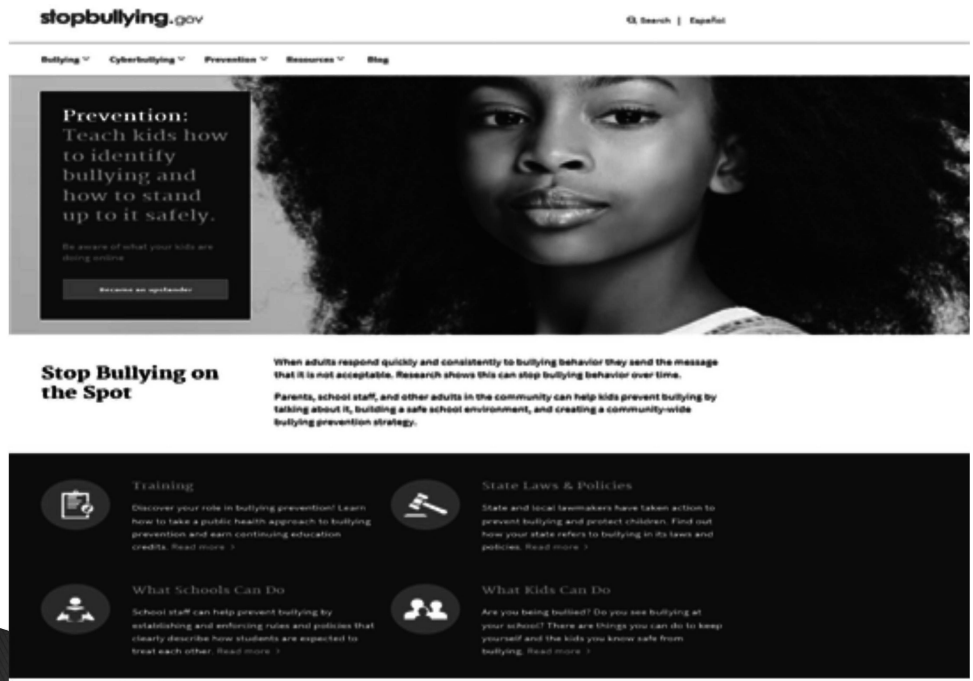

III. 교육정책

2009	오바마 행정부의 블링에 관한 다기관 테스크 포르팀 조직	▪ $27백만 달러를 "안전과 지원 학교 그랜트 프로그램" 을 통해 블링 문제를 위해 투입할 것 ▪ "초등과 중등 교육법" 의 개정 안에서 안전을 위한 자금지원 계획
2010.10.26	Dear Colleague 문서	▪ LGBT, 종교,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한 괴롭힘이 차별적 블링이며, 이는 연방의 반차별법 위반임 ▪ 교직원들은 이러한 차별적 블링에 대해 학생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 ▪ 향후 2011년 초에 연방 교육부 주최로 백악관에서 학생, 교사, 부모, 코치, 지역사회 리더 들의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근절에 대응토록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 ▪ 기술적 지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육가들이 그들의 의무와 자원에 대해 더 잘 알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
2010. 12.10	Federal Partners in Bullying Prevention Task Forc	▪ 블링 근절을 위한 현장 기반 사례에 대해서 대중의 지원을 받을 것임을 공표 ▪ 승인받은 자료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stopbullying.com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이라고 공표
2010.12.16	Dear Colleague	▪ 연방 교육부는 각 주정부에게 강력한 반-블링 법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 ▪ 각 주정부가 이러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연방 교육부는 기술적 지원을 할 것 ▪ 29개 주로부터 관련 법을 받아서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가 2011년에 출판될 것이라고 계획
2011.3.10	백악관에서 "White House Conference on Bullying Prevention" 개최	▪ 블링 근절을 위한 연합 노력 촉구 ▪ 150명의 학생, 부모, 교사, 비영리 단체 리더, 옹호자, 정책 입안가들이 모여서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 및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소개 ▪ 교육 분야의 모든 단체들은 블링 근절을 선언
2011. 12.6	보고서 발행	▪ 각 주의 블링 법와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표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가 개선할 것을 권고
2012. 4.20	교육부 장관	▪ "Student Non-Discrimination Act"와 "Safe Schools Improvement Act" 에 관해 지지의사 ▪ 연방 교육부는 블링에 단호히 대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블링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
2012. 6.27	학교 버스 운전기사 용 반-블링 가이던스 발행	블링의 10%가 버스 안에서 발생하지만 운전기사들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가이던스가 개발
2012.9.28	교사용 반-블링 가이던스 발행	블링의 33% 학교 교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가이던스 개발
현재까지	실태조사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를 발행하여 학교의 안전과 학교에서 발생한 블링을 포함한 폭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 제시하

Maine Department of Education

Newsroom | Contact Us | Commissioner | A-Z Index

Search DOE SEARCH

About | Maine Educators | Teaching & Learning | Maine Schools | Testing & Accountability | Data & Reporting | Funding

Home → Maine Schools → School & Student Supports → Bullying Prevention

- School Health Services
- Counseling & Social Services
- Student Behavior
  - Behavior
  - Bullying Prevention
  - Restraint and Seclusion
- School Climate
- Highly Mobile Students
- Attendance & Dropout Prevention
- Employee and Student Wellness

Bullying Prevention

safeSCHOOLS BY VECTOR SOLUTIONS

Law, Model Policy and Procedures

Data

Bullying Prevention Resources

Maine has taken important steps to assess and improve school climate and culture,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bullying, harassment, and sexual harassment, in order to assure that students are learning in a positive and respectful school environment.

Maine's anti-bullying law recognizes that bullying behavior must be addressed to ensure student safety and an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

Bullying Prevention: Online Professional Development

Bullying: Recognition & Response is a free, no cost to Maine schools, online video that is 67 minutes in length and is divided into 7 sections, with a quiz at the end, and is available free to schools. The video can be shown to a large group, small groups, or viewed individually. Delivery of the video should be done in a way that best meets the staff's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and is responsive to the school district's efforts to address bully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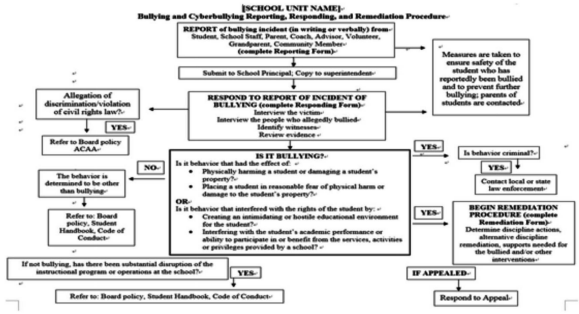

state-wide substantiated incidents of bullying

Show 10 entries

Search:

Bullying Type	2016-2017	2017-2018
All Types	698	715
Cyberbullying	85	107
Electronic Expression	44	48
Physical act or gesture	188	174
Retaliation	12	19
Verbal/Oral	350	343
Written	19	24

Showing 1 to 7 of 7 entries

Previous 1 Next

인성교육정책

- 1999년 조지아 주: 반-불링법 제정, 각 학교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
  Georgia House Bill No. 84 Georgia Code Annotated §20-2-145 - Character education
- 2005년 버지니아 주: 반-불링법 제정, 각 학교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
  Virginia House Bill No. 2879 Virginia Code Annotated §22.1-208.01 - Character education
- 1937년 뉴욕 주 인성교육 실시
- 연방법 1994년 "Improving America's School Act"
- 2001년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 2011년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학습적, 사회적, 정서적 학습법(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ct)" 항목을 신설하여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불링, 폭력, 비행행동 예방
-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에 근거한 퇴학과 정학으로 인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의 비행행동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회복적 사법, 행동치료,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한 긍정적 관계구축 능력을 함양해야 함

IV. 관련 기관

- 2009년 "불링에 관한 다기관 테스크 포스" 팀
-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 방위부(Department of Defense)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1.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 설립된 법령을 토대로 자세한 절차들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표
- 각급 학교 모니터링
- 연방 교육부와 주 교육부는 학교들이 이러한 법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과 자금적 지원
- 교육통계청: 불링 데이터 구축
- School Survey on Crime and Safety(SSOCS)
- School Crime Supplement, SCS(with 사법통계청)
-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갱, 마약, 총기 등 사고 관련
-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교육부와 함께 "학교범죄 조사(School Crime Supplement, SCS)'를 실시
- 법무부 인권국(Civil Rights Division): 차별적 괴롭힘 사건 접수
-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OJJDP): 불링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우수사례를 소개

3.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질병통제 및 예방 센터: 청소년 폭력=학교폭력 & 불링 대응
-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 “Bullying Surveillance Among Youth: Uniform Definitions for Public Health and Recommended Data Elements“(2014)
- "A comprehensive Technical Package for the prevention of youth violence and associated risk behaviors“(2016)

IV. 폭력예방 프로그램

- 2019년에 Gaffney, Farrington, Ttofi는 12개국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83개의 평가연구를 메타 분석
- 불링 예방교육은 가해의 19~20%, 피해의 15~16%를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 가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8개 프로그램으로는 노르웨이와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OBPP이며, 이 외에도 KiVa, Second Step, Steps to Respect이었다.
- 피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NoTrap! 이며, 이 외에도 Bully Proofing Your School, Steps to Respect, KiVa, 와 OBPP 등

- 동일한 지역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 도입 전에 각 학교에서 특정한 불링이 나타나는 지를 사전 조사할 것
- 평가 연구 확인할 것
- 학교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것만 하면 안되고 다른 것과 병행할 때 효과적
- 학교/반/부모/친구/개일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다면적 단계에서의 개입 요인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할 것
- 사전 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요소 포함할 것
- 또래가 중재하는 온라인 포럼을 실시할 것
- 핫스팟 감독과 불링 시나리오를 다루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
-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소득 불균형은 불링의 가피해 높은 레벨의 예측 요인임
- 소득 지역간의 불링의 원인이 다르므로 이를 조사해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할 것
- 매년 다른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일 학교에서 다수의 평가연구를 진행할 것
- 평가를 계속 실시해서 프로그램 개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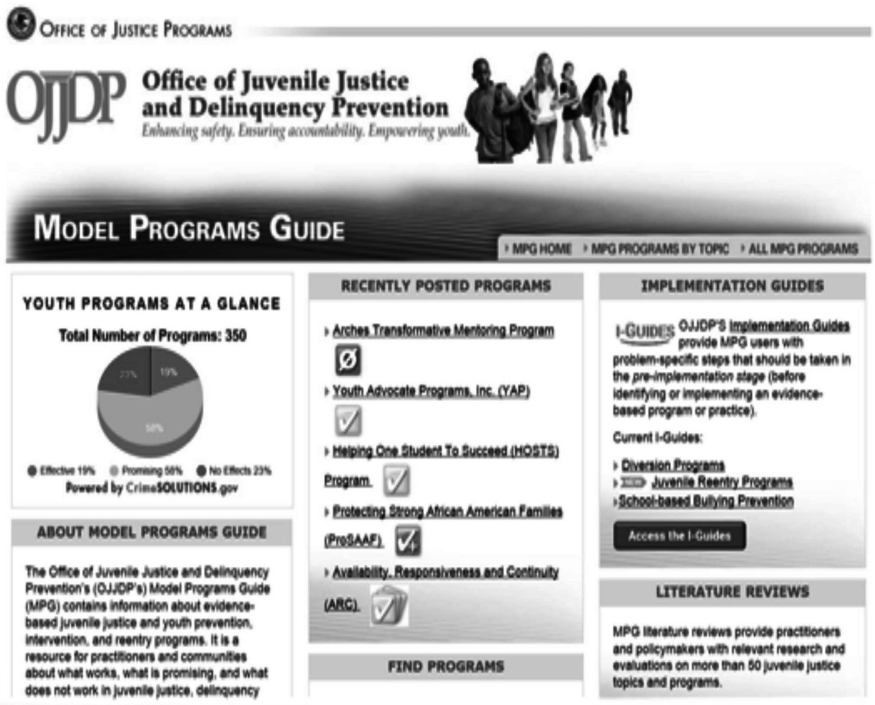

예방분야	프로그램 명	효과성 진단
bullying prevention (불링예방)	positive action	효과 있는(works)
	second step	
	steps to respect	
	stop school bullying	
	bully promoting youtr school	유망한 (promising)
	KIVa	
	Success in Stages	
	WITS Primary Program	
school violence prevention (학교폭력 예방)	Peers Making Peace 2013	
	Responding in Peaceful and Positive Ways (RIPP)	
	School Health Center Healthy Adolescents Relationships Program (SHARP)	효과없음 (dosen't work)
bullying prevention (불링 예방)	Second Step for Elementary School (2011 Edition)	
	Second Step Second Step: Student Success Through Prevention Middle School Program (2008 Edition)	

VI. 시사점

1. 교육법과 형법을 통한 단계적 대응
2.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불링 대응 전략 공표와 자료 접근성
3.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 및 예방 센터"의 활동
4. 불링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실시
5.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실시
6. OJJPD의 프로그램 분석과 제시
7.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한 고찰

- 학교전체가 참여하는 전략, 학교전체 및 개인을 타겟으로하는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훈련, 또래 집단의 활용, 활동형 프로그램, 학년별 다른 전략 수립, 소득 차이에 따른 지역별 다른 전략 수립

토론

미국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박 교 선 교장
향남고등학교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일견(一見)

❑ 방향

미국과 우리나라는 지리·문화·교육·행정시스템·학교폭력 범죄 양상 등의 여건과 상황이 동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 연방 또는 특정 주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모방하거나 수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할 점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발제문의 미국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학교폭력 예방 관련 시스템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안

○ 지원 기관망 구축

-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학교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트레이닝, 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 안전센터(주마다 약간의 용어 차이는 있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제도 훈련센터 운영을 통해 1시간 정도의 무료 동영상 교육 후에 질병본부의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Online (TCEO)를 통해 지속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학교 안전센터는 없으나,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할 수는 있다. 장기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별도의 예산과 인력으로 학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 본청과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뿐 아니라 각종 폭력·자살·학업중단·인권·각종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 제공, 학교별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서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종합 관리 및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어울림 프로그램 자료 및 원격연수, 관련 다양한 자료와 정보 제공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에듀넷 티클리어 내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각 시·도교육연수원별로 연수(집합식 또는 원격) 프로그램 운영, 일부 사설 원격연수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이 학교폭력 관련 연수 기관 및 자료 제공처가 산재해 있다. 또한 교장·교감·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몇 시간 정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 시스템과 자료 제공처가 이러하다 보니 가령 ○○○선생님이 학교폭력 관련 교수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자 해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희망하는 연수 프로그램(과정)이 어느 기관이나 시·도교육연수원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으며, 파악했더라도 타 시·도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연수를 이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종합센터(가칭)" 싸이트를 개설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 시·도교육연수원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연수 프로그램(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 **지역별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자료 등의 개발·발굴·보급 제고**

- 미국의 경우 2019년에 Gaffney, Farrington, Ttofi는 12개국(호주, 캐나다 등)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83개의 평가연구를 메타 분석하였다는데, 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정책 제안 중 하나는 '기존의 불링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코자 한다면 '동일한 지역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에서 효과적이라고 평가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의 도서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대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문화와 시설 인프라 등이 다르듯이 지역별로 여건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 교육지원청별로 프로그램이 개발 또는 발굴되어 보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유추되며, 학교폭력 관련 몇 개의 전문싸이트에서도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나 사례들이 분류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국 각 시·도교육청과 해당 직속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 또는 인권교육 등과 관련한 시·도 조례, 지침, 자료나 프로그램 개발·보급, 각종 사례(우수사례, 실패사례 등) 발굴·보급, 통계 산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제안한 중앙 정부 차원의"학교폭력 예방 종합센터(가칭)"와 각

시·도교육청(해당 직속 교육지원청 포함)를 연결해 주면 전국의 유사한 여건과 환경의 학교 간 유용한 정보공유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싸이트 명칭 변경 고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에듀넷·티-클리어 내에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전용 싸이트맵이 운영 중인데, 학부모나 학생 또는 교원들이 이 싸이트를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명칭에 "도란도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도란도란"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종합포털 싸이트에서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싸이트를 정확히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칭에서 "도란도란"을 삭제한 개칭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프로그램, 연구 등에 대한 메타 분석**

- 미국의 경우 2019년에 Gaffney, Farrington, Ttofi는 12개국(호주, 캐나다 등)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83개의 평가연구를 메타 분석하고 그 연구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관련 정책 시행, 시스템 구축, 예산 투입, 프로그램 운영, 자료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연구 등이 많은 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 **일관성·지속성있는 분위기 조성**

- 미국의 경우 2011년 3월 연방 교육부가 백악관에서 "White House Conference on Bullying Prevention" 개최하여 불링 근절을 위한 연합 노력을 촉구하고, 교육 분야의 모든 단체들은 온라인 캠페인 지속,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실행계획 수립 실행 등을 선언하였다.
- 우리나라도 캠페인 전개, 학급회나 학생회 등에서의 폭력 예방관련 회의 등을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주제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의제화하며, 교육·보건·치안·언론·NGO 등 관련 민관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범국가적 캠페인 등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되면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 **"국가 차원의 (가칭)학생생활 지원 종합센터"신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학업중단 예방, 자살예방, 아동학대 예방, 가정폭력 예방, 인권교육, 각종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 및 연수 등이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별 분야별로 각기 제공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런데 제공되는 자료들도 풍부하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청별 편차도 심한 것 같고, 학생이나 교원 입장에서 관련한 자료나 정보를 찾거나 연수를 받고 싶어도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폭력, 학생의 자살, 학업중단, 가출, 인권교육, 아동학대, 가정폭력, 각종 안전사고 등은 상호 연계성이 있는 영역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생활지원종합센터(가칭)"를 신설하여 이곳에서는 학교폭력, 학생의 자살, 학업중단, 가출, 인권교육, 아동학대, 가정폭력, 각종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전문적 연구뿐 아니라 통계, 자료, 프로그램, 법령(판례 포함), 우수사례(지역별, 학교급별 등),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원격연수 등을 제공하고, 앞에서 제안한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등과 관련한 연구, 다양한 정보와 자료 연수프로그램 등에 대해 거의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아닐까 한다. 이제는 성관련 정보와 자료 및 연수가 필요하면 곧바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료집 19-S41

제27회 청소년 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인 쇄 2019년 12월 12일 발행
발 행 2019년 12월 12일 인쇄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6/7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